수시연구과제 2024-02

해외 귀금속 업계 부가가치세 탈루 현황 조사 및 제도 분석을 통한 국내 시사점

정다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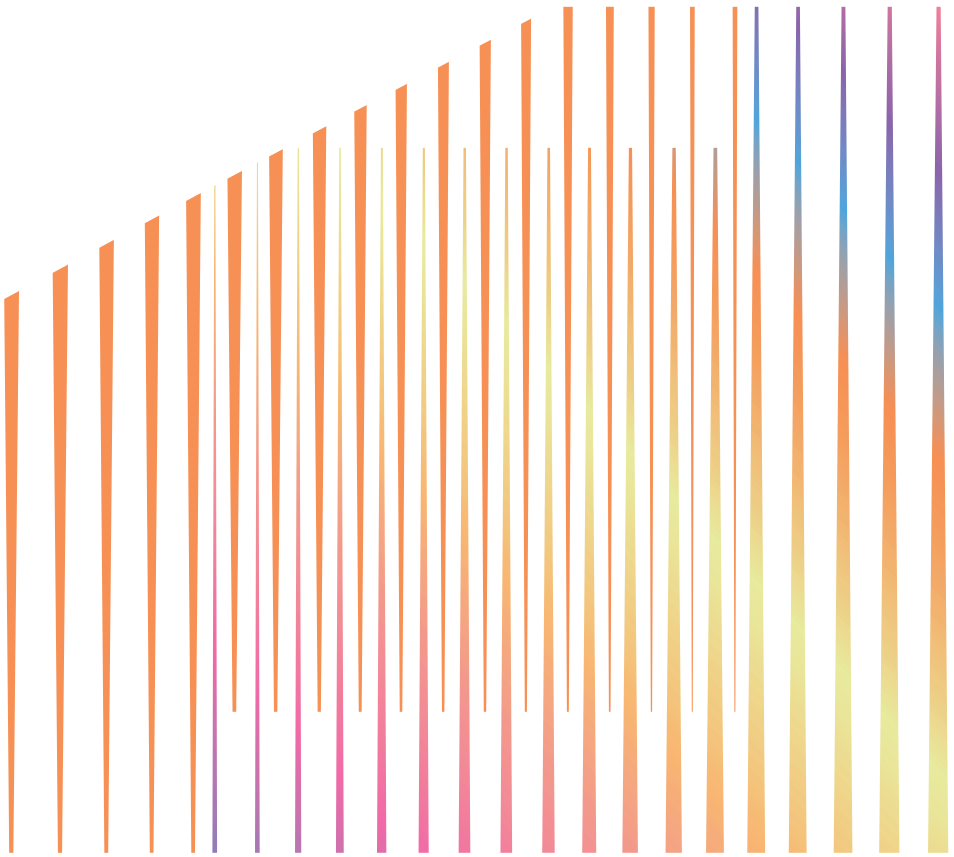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수시과제

해외 귀금속 업계 부가가치세 탈루 현황 조사 및 제도 분석을 통한 국내 시사점

2024. 6.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서 언

본 연구는 해외 귀금속 업계 부가가치세 탈루 현황을 조사하고 제도 분석을 통해 국내 시사점을 찾는 연구이다. 귀금속 관련 부가가치세의 탈루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여러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관찰되었고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부가가치세제 개편 및 세무 행정의 개선을 통해 이러한 탈루를 방지하고자 노력하였다.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신용카드사 대리납부제도 등 제도적 개혁부터, 탈루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처벌 규정의 개선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귀금속 업계의 부가가치세 탈루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를 운용하는 주요 국가들의 귀금속 관련 부가가치세제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제도 개선점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도 귀금속 관련하여 매입자 납부특례를 운영하는 등의 정책 노력을 기울였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개선에 대한 평가 작업이 미흡하여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고는 우리나라 철, 스크랩 시장 등에 도입되었던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제도적 개선 노력의 효과도 살펴보았다.

국내 귀금속 시장에 매입자 납부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만큼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의 도입은 더 이상 개선점으로 논의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가가치세 탈루가 적발되고 있는 것은 귀금속 거래 시장의 무자료 거래 관행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자료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이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소비자들 역시 이러한 거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귀금속 시장의 탈루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탈루 방지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현금 영수증 발급 요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다. 소비자들에 대한 적절한 인센티브를 설계하여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도록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정다운 연구위원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의 과정에서 원내 박사 및 외부 전문가들의 조언은 본 연구를 완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최종보고서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후 연구 방향을 제시해 준 익명의 평가자들께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이 책임을 지고 작성한 것으로서, 연구자들의 독자적인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

2024년 6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 재 진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본고는 해외 귀금속 거래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탈루의 범죄 형태를 요약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탈루 규모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금 거래 시장에서의 탈루는 주로 회전목마형 사기 또는 행방불명 사업자로 인한 사기로 발생한다. 거래 징수 주체인 매출 사업자가 매출세액을 과세 당국에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과거 금 거래 시장에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상황과 유사하다. EU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EU 역내 단일 시장 도입 이후 국경 간 거래가 거래 과정에 포함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로 국내 시장에서의 부가가치세 탈루가 문제가 되었던 점이 차이점이다.

현재 매입자 납부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금 거래 시장에서의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을 수 있는 추가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본고에서 싱가포르의 사례를 살펴본 바와 같이, 금 거래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어느 한 사업자에 대한 탈세의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금 거래 시장의 위축을 야기할 수도 있고, 사업자들의 추가적인 납세 협력 비용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단점도 야기되지만, 이를 통해 금 거래 시장의 양성화를 통한 세수 확보 및 거래 양성화에 따른 시장 기능의 회복 등 장점 측면을 고려할 때 충분히 도입해 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현행 매입자 납부제도하에서 다음 단계의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환급해 주는 조건에 더해 탈세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증 서류를 제시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자들의 무자료 거래 위반 적발 시 더 강한 제재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금 거래 시장은 무자료 거래의 관행을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의 문제이지만, 그 원인을 추적해 보면 최종 소비단계에서의 현금 거래 등을 통한 무자료 거래가 일부 포함된다. 최종 소비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로 금지금 등을 거래할 경우 정상적으로 사업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최종 소비자를 뺏길 가능성이 높고, 이는 다시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는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최종 소비자 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이러한 무자료 거래 행태의 사슬을 끊기 위해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보다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인의 명의로 1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 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심거래보고제도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의심거래보고제도는 1거래일 동안 1천만원 미만의 거래라 하더라도 분할 지불 등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보고하는 제도이다. 이를 토대로 국세청은 향후 세무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이미 운영 중이고, 요건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탈세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셋째,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도록 유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있지만, 이보다 더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론적으로는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금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와 소위 '뒷금'의 공급가액은 10%가 차이나야 한다. 하지만 대략 이 둘의 차이는 10%보다 작은 것으로 확인된다. 공식적인 통계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귀금속 업계 종사자들은 '뒷금'의 시세를 대략 정상 공급대가에 비해 3~4% 정도 낮게 본다. 결국 소비자들은 10%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정상적인 금 거래 공급가액 대비 약 5% 이상을 비싸게 구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정상적인 금 거래 시장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매입 금액의 약 5~10%를 세액공제 해 준다면 소비자와 정부 모두 이득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금 매입자들이 대부분 고소득층일 가능성이 높아 이들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금 거래 시장의 정상화를 통한 세수 확충 및 그로 인한 재원 확보 측면에서 정책 타당성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외 사례에서는 특별히 소비자들에 대한 유인책을 통한 금 거래 시장의 정상화 방안을 찾지는 못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시장에서의 무자료 거래 관행이 고착화된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설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 차

Ⅰ. 서론 ····· 1

Ⅱ. 금지금 등 부가가치세 탈루 해외 사례 ····· 5

1. EU ····· 11
2. 영국 ····· 20
3. 호주 ····· 25
4. 일본 ····· 28
5. 싱가포르 ····· 31
6. 독일 ····· 35
7. 프랑스 ····· 37
8. 이탈리아 ····· 38

Ⅲ. 주요국의 금 거래 부가가치세 탈루 대처 방안 ····· 39

1. 선행연구결과 ····· 40
2. 각 국가별 대응방안 ····· 45

Ⅳ. 우리나라의 현황 및 사례 분석 ····· 50

1. 금지금 및 귀금속 시장의 탈루 현황 ····· 52
2. 매입자 납부제도의 평가(철 스크랩 시장) ····· 55

Ⅴ. 결론 및 시사점 ····· 74

참고문헌 ····· 78

국문요약 ····· 81

Abstract ····· 82

표목차

〈표 Ⅱ-1〉 매입자 납부제도가 적용되는 상황에서의 탈세 과정 ····· 12
〈표 Ⅱ-2〉 유럽 주요 국가의 부가가치세 탈루 규모 추정치 ····· 15
〈표 Ⅱ-3〉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이후 유럽 주요 국가의 부가가치세수 변화 ····· 16
〈표 Ⅱ-4〉 영국 GDP 대비 부가가치세수 비율 ····· 23
〈표 Ⅱ-5〉 행방불명 사업자로 인한 부가가치세 갭 추정치 ····· 24
〈표 Ⅱ-6〉 부당 거래 인지 위험 요인 지표 ····· 33
〈표 Ⅱ-7〉 부당 거래에 대한 실질적 대응 ····· 34
〈표 Ⅱ-8〉 독일의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 재화, 용역 및 도입 시점 ····· 36
〈표 Ⅱ-9〉 프랑스의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 재화, 용역 및 도입 시점 ····· 37

〈표 Ⅲ-1〉 매입자 납부 지정기관 제도 도입의 효과 ····· 44
〈표 Ⅲ-2〉 카드사 대리납부 해외 사례 ····· 48
〈표 Ⅲ-3〉 매입자 납부 지정기관 제도 현황 ····· 48

〈표 Ⅳ-1〉 금 거래 건수 및 부가가치세액 ····· 52
〈표 Ⅳ-2〉 금 거래 수출입 동향 ····· 53
〈표 Ⅳ-3〉 귀금속 소매업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포상금 ····· 54
〈표 Ⅳ-4〉 부가가치세 징수 결정액 및 당해 연도 신규 체납액 ····· 59
〈표 Ⅳ-5〉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매출액 변화 ····· 63
〈표 Ⅳ-6〉 사업체 수 및 사업체 1개소당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매출액 변화 ····· 64
〈표 Ⅳ-7〉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의 효과 1 ····· 65
〈표 Ⅳ-8〉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의 효과 2 ····· 66
〈표 Ⅳ-9〉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의 효과 3 ····· 71
〈표 Ⅳ-10〉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의 효과 4 ····· 71

그림목차

[그림 Ⅰ-1] 금지금의 부가가치세 탈루 거래 ····· 2

[그림 Ⅱ-1] 회전목마 사기의 거래 형태 ····· 7
[그림 Ⅱ-2] 변형된 형태의 회전목마 거래 ····· 14
[그림 Ⅱ-3] 영국의 부가가치세 갭 연도별 변화 ····· 24
[그림 Ⅱ-4] 호주 부가가치세수 연도별 변화 ····· 28
[그림 Ⅱ-5] 일본 금 거래 관련 탈세 현황 ····· 29
[그림 Ⅱ-6] 일본의 금 밀수 상대국 현황 ····· 30

[그림 Ⅲ-1] 신용카드사 대리납부 효과 ····· 42
[그림 Ⅲ-2] 국가 간 비교(매입자 납부 지정기관 제도 및 신용카드사 대리납부 제도) ·· 44

[그림 Ⅳ-1] 철 스크랩의 분류 ····· 56
[그림 Ⅳ-2] 철 스크랩의 공급원별 연도별 추이 ····· 56
[그림 Ⅳ-3] 철 스크랩 가격의 연도별 변화 ····· 57
[그림 Ⅳ-4] 연도별 부가가치세 징수 결정액 대비 체납비율 ····· 60
[그림 Ⅳ-5]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행추세선 확인 ····· 67
[그림 Ⅳ-6] 처치집단과 통제집단(대안; alternatives)의 평행추세선 확인 ····· 69

Ⅰ. 서론

국내 귀금속 업계는 고금(뒷금) 등을 거래하면서 직간접적으로 부가가치세 탈루 위험에 노출되어 잠재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귀금속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여 귀금속 관련 부가가치세제를 개편해 달라고 건의한다. 폐전자제품 등으로부터 수집한 고금, 밀수금 등 매입자료가 없어 매출 시에도 무자료로 거래되는 귀금속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탈루 현상은 그 역사가 꽤 오래되었다. 금 거래 시장의 부가가치세 탈루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매입자납부특례 제도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무자료 거래 등의 부가가치세 탈루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귀금속 관련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도매업체들의 경우 세금계산서 거래는 거의 하지 않는 무자료 거래가 많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고 매출과 실제 매출의 차이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장조사 결과의 예를 살펴보면, 월 매출 10억원 정도의 도매업자가 실제 계산서 거래 매출액은 1억원 미만에 그치는 경우가 있고, 이마저도 어쩔 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 금액이라 할 수 있다. 제조업체의 경우 매입자료는 전체 매입의 5%도 안 되는 실정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부수적으로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한다. 만약 전체 직원을 실제 급여대로 신고하면 회사의 운영은 적자 상태가 될 것이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사업주와 직원 간의 마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제조업 사업체 운영과 관련하여서도 자본금 대비 사업체에 묶여 있는 현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금 출처가 부재하여 자본금으로 귀속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추가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융통 자체가 어려워지는 등 귀금속 업계의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귀금속 업계에 만연한 이러한 무자료 거래는 사업자들만의 문제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귀금속 업계 전체 거래 과정의 특성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체들의 매입 자료가 부재한 것은 도매업체들이 계산서 발급을 거부하기 때문인데, 총판 도매업체들이 계산서 발급을 꺼려하는 것은 소매업체들이 음성 거래

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래의 사슬에서 소매 업체들이 무자료 거래를 선호하는 것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 거래를 선호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만약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기준으로 거래를 할 경우 경쟁 판매업체가 조금이라도 가격을 낮추는 순간 시장 전체를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비과세, 무자료 거래 등이 경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금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전면적으로 비과세하는 정책으로의 변화를 주장하기도 하고 또는 금 매입 과정에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기도 한다. 실제 고금 등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한 적이 있으나, 금 거래의 양성화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림 Ⅰ-1] 금지금의 부가가치세 탈루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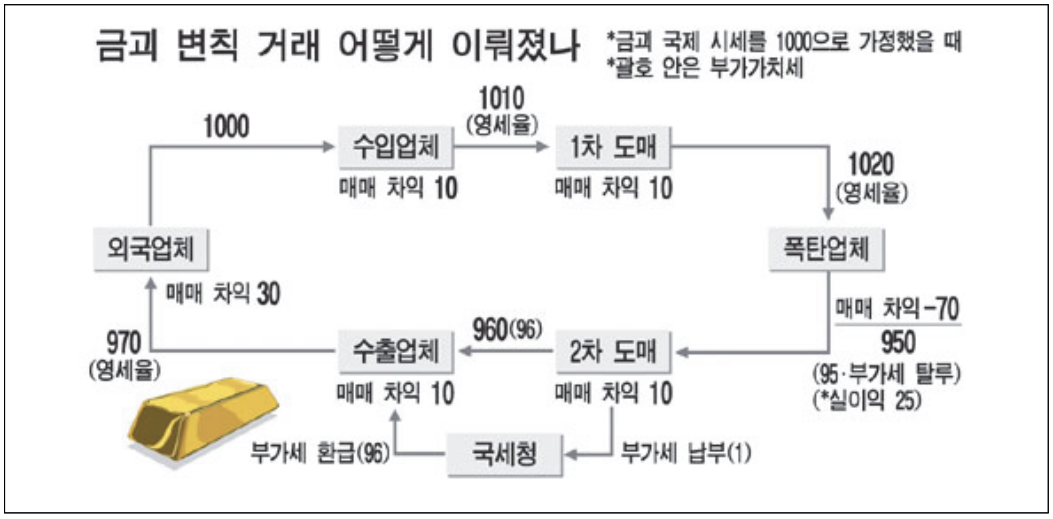

자료: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4367327, 검색일자: 2024. 4. 24.

귀금속 시장에서의 부가가치세 탈루 현상을 막기 위해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금 거래에 대해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금지금의 경우 과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 또는 면세 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 탈루가 사회 문제로 크게 부각된 적이 있다. 면세 금지금을 시장에 유통시켜 수출 과정에서 영세율 적용을 받아 매입세액을 환급받고, 또 순환 거래에서 유통되는 금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판매한 후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과세 관청에 납부하지 않고 사업체를 폐업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그림 Ⅰ-1]). 일명 '폭탄업체' 등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금 거래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매입자 납부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폭탄업체 및 수출 과정에서의 금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탈루는 매입자 납부제도로 일부 방지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여전히 국내 귀금속 거래 시장에서의 무자료 거래를 통한 탈루 문제는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무자료 거래의 실상을 파악하는 것은 실제 통계가 없는 까닭에 매우 어렵다. 또한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의 효과를 살펴본 선행 연구가 부재하여 실증 근거에 대한 논의 및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없는 부분도 금 시장과 관련한 정책 현안의 한계라 할 수 있다.

Keen and Smith(2006)에서 지적하듯이, 부가가치세 탈루는 대체로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발생된다. 첫째, 허위 매입 자료를 통한 부가가치세 환급에 의한 탈루이다. Bird(1993)가 지적하듯이, 부가가치세 탈루범들에게 "세금계산서는 정부에 대한 수표"일 뿐이다. 이러한 허위 매입 자료를 통한 탈루는 신생기업일수록 악용하는 경향이 크다. 왜냐하면 이미 사업체를 오랜 기간 운영한 경우 과장된 매입 기록은 사업체 자체의 낮은 마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과세 당국의 탈루 의심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환급에 의한 탈루는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도 종종 관찰된다. 주로 수출 재화에 적용되는 영세율의 경우 매입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기 때문에 일부 사업자들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세무 당국은 세무 행정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영세율 신청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환급을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환급만 이뤄지고 재화의 수출은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금지금 등의 경우 수출 재화 금이 도로 국내로 반입되는 상황에서 환급만 발생하는 경우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Tait(1988)에 따르면 1980년대 네덜란드 부가가치세 탈루의 44%는 매입 자료의 과대 보고 또는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것으로 추산하였다.

둘째, 매입불공제 항목에 대해 공제하여 부정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가 존재한다. 과면세 겸영 사업자의 경우 매입세액의 경우 과세에 사용된 매입에 대해서만 안분하여 적용된다. 그런데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이에 대한 정확한 안분이 어렵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과세에 해당하는 매입을 과다하게 계상하는 경우

가 발생할 수 있다. 비록 이러한 안분 과정에 대한 세무 당국의 면밀한 검토가 진행되지만, 애매모호한 경우에 매입 공제를 통한 부가가치세의 부당한 환급이 발생할 수 있다.

셋째, 매입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일종의 유령회사 설립을 통한 부가가치세 탈루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세무 당국이 모든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발급만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실시간으로 실제 거래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이에 따른 탈루의 가능성은 많이 약해진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금 거래 시장에서의 부가가치세 탈루 문제도 위와 같은 상황으로 요약될 수 있다. 본고는 금 거래 시장에서의 해외 부가가치세 탈루 현황과 그 대응 방안을 정리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토대로 국내 금 거래 시장에서의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금 거래 과정에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도입된 매입자 납부제도에 대한 평가를 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앞으로 정책적 고민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금지금 등 부가가치세 탈루 해외 사례

귀금속 관련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탈루 현황 및 관련 제도에 대한 조사는 EU를 비롯하여 영국,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싱가포르 등 개별 국가에 대해 검토한다. 귀금속은 가공을 하더라도 추후 원상태로 복귀하여 마치 가공된 적이 없는 재화처럼 취급할 수 있고, 가공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제도의 특성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탈루 범죄에 교묘히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범죄는 1980년대부터 성행한 것으로 보이며, 1993년 EU의 경제 공동체 도입과 함께 더욱 두드러지게 된다. EU는 회전목마 거래 등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탈루 문제가 커짐에 따라 매입자 납부를 EU 주요 의제로 삼고 매입자 납부제도를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EU는 EU의 부가가치세 공통 지침 199조 및 199a조에 의해 부가가치세 탈루 가능성이 높은 특정 재화 및 용역에 대해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 적용 여부를 역내 회원국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매입자 납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 199조에 열거하고 있다. 대상은 건설업, 청소, 수리, 철거 서비스업, 중고자재, 동일한 상태로 재사용할 수 없는 자재, 스크랩, 산업 폐기물, 재활용 가능 폐기물, 부분 가공 폐기물 등이다. 199a조에서 열거하는 항목은 온실가스 배출권, 핸드폰, 최종 소비 제품 상태 전의 집적 회로 장치, 가스 및 전기 공급, 가스 및 전기 인증서, 게임 콘솔, 태블릿 PC 및 노트북 컴퓨터, 완제품 형태가 아닌 금속, 보석류의 금속, 199조(199조 D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투자용 금 등을 포함한다.

본고의 주제인 금과 관련한 권고는 구체적으로 199조 D항, 폐기물, 스크랩 등에 의해 규정하거나 199a조에서 특별 규정으로 적용할 수 있다. 199조 D항에 근거하여 매입자 납부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23개국으로 파악된다.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레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이 포함된다. 199a조의 J항은

199조 D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투자용 금 등에 대해 매입자 납부를 적용하는 근거이며 이에 근거하여 매입자 납부를 적용하는 국가는 2개 국가로 오스트리아와 슬로바키아이다. 지금 열거한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금(gold), 귀금속(jewelry), 금속(metal) 등의 거래에 대해서 매입자 납부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지금, 쥬얼리 보석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탈루는 최근 들어 주목받는 사건이 아니다. 이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논의도 오랜 기간 지속되며 금지금, 보석 등에 대한 매입자 납부제도의 도입이 많은 국가들에 의해 채택된 것이다. 금지금, 보석 등의 부가가치세 탈루에 관한 논의는 1970년대 초부터 주목받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는 유럽에서 회전목마 사기(carousel fraud) 사건이 횡행하였던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많은 주목을 받았다. 1996년부터 2006년까지를 소위 회전목마 사기에 따른 부가가치세 탈루의 정점이라 할 수 있다. 이 당시 EC(European Commision)의 추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탈루로 인한 세수 결손 규모는 부가가치세수의 최소 10%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산한다. 특히 영국의 경우 2006년에 처음으로 연간 부가가치세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였는데 이에 대한 결정적인 요인을 회전목마 사기에 의한 부가가치세 탈루로 지목하기도 한다(Ainsworth, 2006).

유럽의 회전목마 사기는 한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여러 국가가 포함된 EU 역내 거래의 근본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예시를 들어 시각화하면 [그림 II-1]과 같다. 회전목마 사기는 종종 행방불명 사업자(missing trader intra-community fraud, MITC) 문제로 일컫기도 한다. 회전목마의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거래 징수 사업자가 사라지면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종종 '폭탄업체'라는 표현으로 국내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회전목마 사기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사업자들의 조직적인 범죄 가담과 EU의 부가가치세 징수 시스템의 맹점에 따라 발생하는 사건이었다. 회전목마 사기에 의한 부가가치세 탈세는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가 포함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국경에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징수하였는데, 거래 시점과 과세 시점의 차이가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사업자들이 이러한 맹점을 악용하며 탈루 규모가 더 커지게 되었다.

[그림 II-1]의 D 사업자는 프랑스에 소재하며 영국에 위치한 B 사업자에게 재화

를 수출한다. 통상 수출 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때 D는 사업자는 해당 거래에 포함된 매입에 대해서는 프랑스 세무 당국으로부터 매입 공제를 받는다. 다음 거래 단계의 사업자인 B 사업자는 수입한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수입 단계에서 납부할 필요가 없이 다음 과세기간에 납부하면 된다. 예를 들어 B 사업자가 D 사업자로부터 10만원에 재화를 수입해 온다고 가정한다. 이럴 경우 B 사업자는 10만원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영국의 부가가치세율이 20%이므로 2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세무 당국에 다음 과세 기간에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납부하지 않고 다음 과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A 사업자에게 공급가액 10만원과 부가가치세 2만원에 재화를 판매한다고 가정한다. B 사업자는 A 사업자가 납부한 2만원의 부가가치세 역시 세무 당국에 납부하지 않고 다음 과세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도망감으로써 부가가치세를 탈루한다.

[그림 Ⅱ-1] 회전목마 사기의 거래 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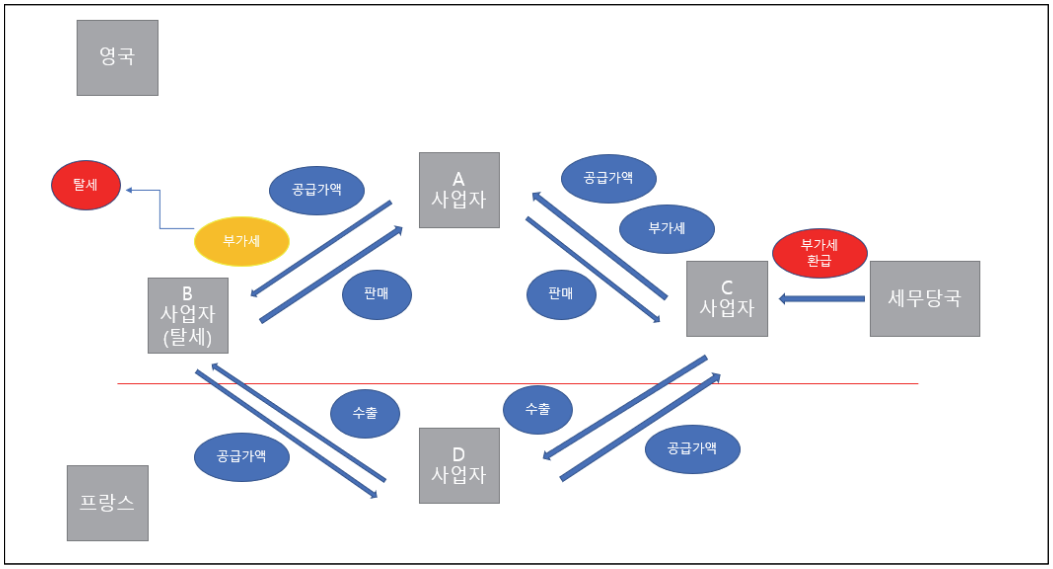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다음 거래 기간을 계속 살펴보면, C 사업자는 A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면서 5만원의 부가가치를 더해 15만원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20%인 3만원에 재화를 거래한다. 이때 수출 사업자인 C 사업자는 재화 매입 과정에서 납부한 3만원의 부가가치세를 과세 당국으로부터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이 3만원 가운데

B 사업자가 대리 징수하여 납부했어야 할 2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2만원이 증발해 버리게 된다. 이 거래 과정에서 A 사업자는 선의의 사업자로 거래 과정에 불법이 포함된 사실을 전혀 모를 수도 있고, 아니면 조직적 범죄에 가담한 사업자일 수도 있다.

다시 이러한 거래는 재화가 프랑스로 들어가게 되면서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금과 같이 재화 자체에서 부가가치가 크게 창출되거나 감가되기 어려운 재화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가공을 하더라도 다시 원상복구가 비교적 쉬운 귀금속 같은 재화는 순환 거래를 통해 동일한 형태의 거래를 창출할 수 있다. 과세 당국이 적절하게 개입하여 이러한 거래 사슬을 종료시키지 못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탈루 규모는 매우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 거래 과정에서 C 사업자의 경우에는 A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사업자일수도 있고 아니면 범죄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업자일 수도 있다.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A 사업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하고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거쳤을 것이다.

[그림 II-1]의 거래는 EU 역내 거래에서 발생하는 회전목마 사기의 매우 단순한 형태를 예시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제3국으로의 수출되거나, 순환 거래 과정에서 가격이 오히려 하락해 본국으로 수입되어 오면서 국내 시장을 교란하고 가격 체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 등 다양한 범죄 사건이 관찰되는 것이 현실이다. 가격을 낮추어 수입해 다시 영국에 들어오게 되면, 정상 거래를 하고 있던 C 사업자들도 이 거래 과정에의 참여 유인이 높아지게 된다. 왜냐하면 동일한 가격에 다시 판매하더라도 매입 가격 자체가 낮아지면서 이윤이 더 많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거래 사슬에서 A 사업자든 C 사업자든 잠재적으로 범죄 거래에 노출된다. 이러한 잠재적인 범죄 가담에 대한 유인의 문제점 외에도 더 심각한 문제는 B 사업자로 인해 이 재화의 거래 시장 자체가 붕괴된다는 점이다. B 사업자는 다른 정상적인 사업자에 비해 탈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되면서 시장 자체를 잠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동일한 귀금속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의 정상적인 사업 행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리는 문제가 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의 귀금속 시장 역시 일부 사업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탈루 유인을 정상 사업자들에게도 전가하면서 시장 자체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에서는 적어도 기업 간 (B2B) 거래에서는 매입자 납부제도(reverse charge mechanism)를 도입하는 것을 권고한다. [그림 II-1]에서 부가가치세 탈세 사업자인 B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B 사업자가 아닌 매입자인 A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이다. 이로써 부가가치세 탈루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핸드폰, 컴퓨터 칩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 2000년대 초중반 이후부터 매입자 납부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매입자 납부제도의 몇 가지 단점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매입자 납부제도는 거래 참여 사업자들의 매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이면서 반대로 매입 납부세액에 대한 부담은 증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매입 납부세액에 대한 관리와 이에 따른 범죄의 개입 여부도 증가할 수 있다(Keen and Smith, 2006). 또한 특정 재화에만 매입자 납부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탈루가 매입자 납부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품목으로 전가되어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선으로 평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부가가치세 탈루를 이론적으로 완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매입자 납부제도를 전반적으로 모든 재화에 걸쳐 적용해야 하는 요구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부가가치세의 판매세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Keen and Smith, 2006). 최종 거래 단계의 판매세로 전환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갖는 장점, 예를 들어 정상 거래의 추적 및 세수 확보의 용이성 등이 희생될 수 있는 만큼 판매세와 부가가치세의 선택 문제도 매입자 납부제도의 전면 도입과 함께 논의해야 하는 난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으로 인해 자칫 그 동안 부가가치세 제도의 주요 장점인 거래 사슬 파악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도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탈루가 이론적으로 완전히 차단될지 여부도 사실은 불투명하다. 최종 거래 단계에서의 판매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최종 책임의 역할을 맡게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최종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 탈루 문제는 해결되지 않게 된다.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주로 남미 혹은 아프리카에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은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제도(reverse VAT withholding)도 있다.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원천징수 기관(withholding VAT agents)에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미리 정해놓은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만큼을 부가가치세로 원천징수해 놓는 것이다. 따라서 추후 실제 거래가 발생하면 공급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기원천징수된 부가가치세만큼을 공제하고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정부의 한 기관이 원천징수 기관으로 지정되고, 이들 기관이 공급자와 10만원(공급가액)의 거래 계약을 체결한다고 가정한다. 이때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기관에 10만원의 공급가액과 이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1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세율이 40%라면, 부가가치세 1만원의 40%인 4천원만큼은 원천징수 기관이 원천징수하게 된다. 공급자가 추후에 부가가치세 과세 신고를 할 때는 원천징수된 4천원만큼은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사 등을 원천징수 기관으로 사실상 지정하여 대리납부 제도(VAT accounts)를 운영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및 대리납부 제도 역시 한계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이 방법은 원천징수 기관 혹은 대리납부 기관에 추가적인 세무 협력 비용을 부과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국가가 보전해 준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추가적인 비용 대비 탈세 방지의 효과가 크다면 정책의 타당성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사업자들이 소위 발생주의에서 현금주의로의 전환에 따른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전환 비용 역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제도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부가가치세 징수 및 납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선택인지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지 않은 한계도 있다(Keen and Smith, 2006).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되고 있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제도의 변화가 어느 정도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 개별 국가별로 귀금속 관련한 부가가치세 탈루 현황을 살펴보고 그 대안들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다.

1. EU

최근 2024년 2월, EU 검찰(EPPO)은 1억 9,500만유로의 대규모 부가가치세 탈루 혐의로 의심되는 단체를 조사하면서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웨덴, 영국, 헝가리 등 유럽 17개국에 걸쳐 180건 이상의 수색과 14명에 대한 체포를 진행하였다. 유럽 전역에서 약 680명의 조사관이 배치되어 적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가가치세 탈루는 주로 핸드폰, 소형 전자기기 및 마스크(코로나19 시기의 보건마스크) 등의 판매와 관련 있다. 이 부가가치세 탈루는 유럽에서 과거 30여 년간 문제가 된 '회전목마 사기' 형태와 유사하다. EU 역내 회원국 간 교차 거래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매입하고 판매한 후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탈루한 것이다. 주요 국가들이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도입되기 전의 부가가치세 탈루와 유사한 형태의 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각 거래 단계에서 매입자 납부제도를 적용하여 각 거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탈루 문제는 원천 차단하지만 다른 국가와의 거래 과정에서 수출업자가 부당 환급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탈세하는 형태는 여전한 것이다.

매입자 납부제도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거래 과정과 부가가치세 탈루가 발생하는 경로를 예시로 살펴보면 〈표 II-1〉과 같다. 스마트폰의 거래 과정을 예시로 사용한다. A국가와 B국가 두 국가를 상정하고 A사와 E사는 A국가에 속해 있고 거래 과정에 참여한 나머지 회사들은 B국가에 속해 있다. 거래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A사가 B사에 스마트폰을 수출한다. B국에서 매입자 납부제도가 적용되어 B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 당국에 직접 납부한다. B국으로 들어온 스마트폰은 국내 유통 거래를 시작한다. B사가 C사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한다. 이때 매입자 납부제도가 적용되어 매입자인 C사가 부가가치세를 과세 당국에 직접 납부한다. 그리고 C사는 여러 중개회사에 스마트폰을 유통하고, D사가 여러 중개회사를 거친 스마트폰을 매입한다.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는 역시 과세 당국에 직접 납부한다. 마지막 거래는 다시 이 스마트폰을 A국에 소재한 B사에 수출하는 것이다. 수출시 영세율을 적용받아 D사는 매입세액공제 환급을 받는다.

〈표 II-1〉 매입자 납부제도가 적용되는 상황에서의 탈세 과정

A. 거래과정	과정	과세
1. A사 (A국) → B사 (B국)	A사가 B사에 스마트폰을 수출	· B사는 스마트폰을 수입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 당국에 납부
2. B사 (B국) → C사 (B국)	B사가 C사에 스마트폰을 판매	· 매입자 납부제도가 적용되므로 B사는 VAT를 거래징수하지 않음 · C사는 100유로에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20유로의 VAT를 세무 당국에 직접 납부
3. C사 (B국) → 중개회사 → D사 (B국) → E사 (A국)	C사는 이 스마트폰을 여러 중개 회사를 거쳐 D사에게 판매하고 E사에 재수출	· D사는 160유로에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VAT 32유로는 세무 당국에 납부 · D사는 E사에 수출하고 세무 당국으로부터 환급 받음
B. 탈세 방식의 예시		
1. B사 → C사	· B사는 C사에 100유로에 스마트폰을 판매하고, · C사는 세무 당국에 20유로의 VAT 납부	
2. C사 → 중개회사 1 (허위 거래)	· C사는 중개 회사 1에 120유로에 판매하고, 중개 회사 1은 세무 당국에 24유로의 VAT 납부	
3. 중개회사 1 → 중개회사 2 (허위거래)	· 중개회사 1은 중개회사 2에 140유로에 판매하고, 중개회사 2는 세무 당국에 28유로의 VAT 납부	
4. 중개회사 2 → D사 (허위거래)	· 중개회사 2는 D사에 160유로에 판매하고, D사는 세무 당국에 32유로의 VAT 납부	
5. D사 → E사	· D사는 E사에 스마트폰을 재수출하면서 VAT 면세를 적용받아 세무 당국으로부터 32유로 환급	

자료: 저자 작성

이 과정에서 탈세가 발생하는 경로는 〈표 II-1〉 아래 부분에 제시하였다. 이 거래 과정에서 여러 중개회사를 거치는데, 중개회사는 허위 사업체로 실질적인 거래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기 위한 가상의 존재이다. 이러한 거래과정을 거쳐 마지막 단계인 D사가 E사에게 수출하는 과정에서 D사는 매입세액 공제 32 유로를 환급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매입자 납부제도가 도입되었어도 부가가치세 탈루가 여전한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취약점 때문이다. 첫째, 복잡한 거래 구조를 만들어 부가가치세 탈루 범죄 추적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여러 중개회사를 통해 복잡한 거래 구조를 만들어 부가가치세를 부풀리면서 최종 거래 단계에서 매입세액 공제의 크기를 크게 만들 유인이 존재한다. 둘째, 허위 거래는 매출자 납부제도와 동일하게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어렵다. 위의 예에서 중개회사들의 거래는 실제 거래가 아니고 허위거래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와 환급만 일어나면서 과세 당국의 추적을 어렵게 만든다. 셋째, 수출과 수입 과정에서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영세 및 면세 등을 악용하는 문제 역시 여전하다는 것이다. D사가 E사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영세율을 적용받게 되면서 D사는 환급을 받게 되는데, 이때 앞선 중개 회사와의 거래는 허위 거래이므로 실제 매입한 금액보다 허위로 신고한 매입금액이 더 커지게 되면서 환급 금액이 실제 매입금액을 초과하여 부가가치세 탈루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취약점으로 인한 사기가 최근 EU 검찰로부터 적발된 것이다.

EU의 부가가치세 탈루는 금지금 등 특정 품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회전목마 사기'라는 형태의 탈루가 재화 품목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993년 1월 1일 EU 역내 단일 시장의 도입은 역내 회원국 간 부가가치세 부과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단일 시장의 도입이 결과적으로는 부가가치세 환급 사기의 증가로 이어졌다. 역내 거래 시 재화 수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재화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바로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부가가치세 탈루가 지속되었다. '회전목마 사기'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비정상적으로 발생시키는 조직적인 범죄행위라 할 수 있다. 앞선 예에서 살펴보았듯이, 세무 당국에 의해 의심스럽게 포착되지 않기 위해 거래 사슬 자체를 매우 복잡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통상 EU 역내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상품을 구입한 후 동일한 회원국 내의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 당국에 납부하지 않은 채 사라지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세한다.

정부 당국의 대응을 회피하기 위해 EU에서의 '회전목마 사기' 거래는 더욱 정교한 형태로 변형되어 왔다([그림 II-2]). 이 거래 시장의 특징은 유사한 거래 사슬이 하나 더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거래 사슬의 목적은 사기 관련 거래를 숨기려는 데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왼쪽 거래 사슬은 행방불명 사업자(Missing traders)로부터 시작된다. 오른쪽 거래 사슬은 소위 컨트라 체인으로 부른다. 왼쪽 거래 사슬에서 중개인 1(왼쪽 브로커)은 행방불명 사업자로부터 시작된 거래에서 표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매입한다. 중개인 1은 그 이후 그 재화를 다른 국가로 수출하면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는다. 중개인 1은 이후 다른 EU 회원국으로부터 영세율이 적용된 동등한 가치의 재화를 매입한다. 중개인 1은

그 재화를 영국에서 부가가치세 20%를 적용하여 버퍼(buffer) 회사에 판매하고, 버퍼 회사는 이를 컨트라 체인에 있는 중개인 2(오른쪽 브로커)에게 판매한다. 중개인 2는 그 재화를 영세율을 적용하여 다른 나라로 수출한다. 그 이후 중개인 1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데, 맨 처음 거래에서 매입한 재화(2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에 해당되는 매입세액과 버퍼 회사에 판매하여 징수한 매출세액이 동일하여 결과적으로 실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 부담은 없게 된다. 이 이후 중개인 2는 청구된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 받게 된다.

[그림 Ⅱ-2] 변형된 형태의 회전목마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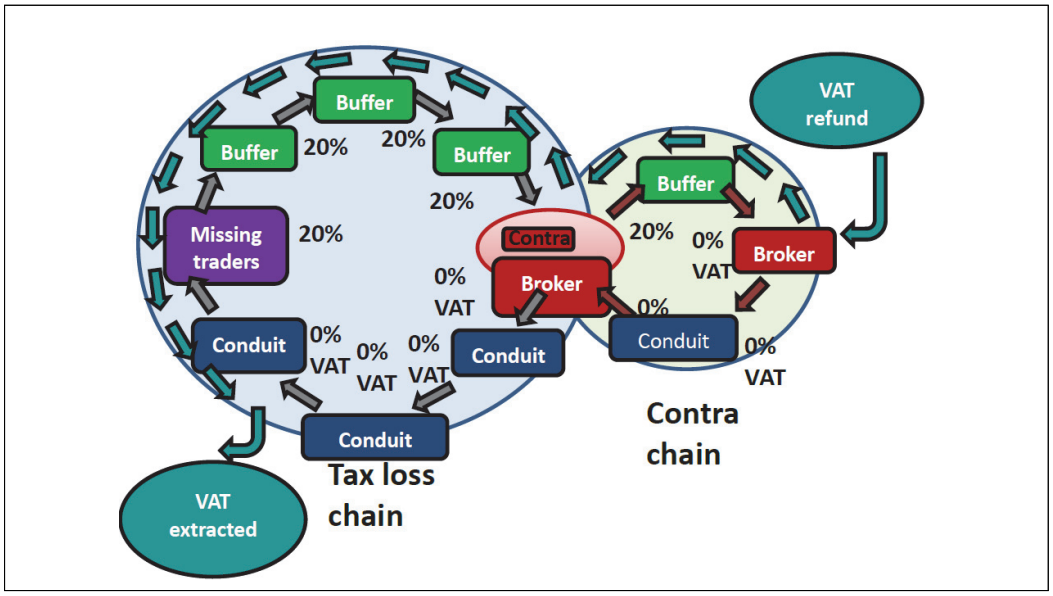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EU의 부가가치세 갭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1,500억유로로 추정되고 있으며, 약 500억유로는 조직적인 부가가치세 탈루 범죄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Feria, 2019). 2000년대 중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부가가치세 탈루, 특히 회전목마형 사기(귀금속, 컴퓨터 칩 등)로 인해 회원국들이 매년 약 600억유로의 손실을 입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유럽 경찰은 회원국들이 회전목마형 사기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탈루 규모가 과거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였지만, 2019년 기준으

로 회전목마 사기 형태 등 행방불명 사업자로 인한 부가가치세 탈루 규모를 약 1천억유로로 추정하는 등(Feria, 2019),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일부 연구에서 살펴본 부가가치세 탈루 추정 규모는 〈표 II-2〉와 같다. Bussy(2020), Stiller and Heinemann(2024), Braml and Felbermayr(2022)의 연구는 국가 간 무역 거래를 사용하여 탈루 세액을 추정하였으며, Frunza(2016)는 국가 간 무역 거래와 부가가치세 세금 격차(Tax gap) 방법을 사용하여 탈루 규모를 추정하였다. EY(2015)는 별도의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부가가치세 탈루 규모를 추정하였고, HMRC(2018)는 국가 계정(national account)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표 II-2〉에서 제시한 부가가치세 탈루 세액의 추정 규모는 연간 평균 추정치이다.

〈표 II-2〉 유럽 주요 국가의 부가가치세 탈루 규모 추정치

국가	탈루 세액 (10억유로)	부가가치세수 대비 비중(%)	연도	참고문헌
EU	1.3	0.1	2004~2019	Bussy(2020)
EU	2.5	0.3	2007~2019	Stiller and Heinemann(2024)
EU	64.5	5.7	2018	Braml and Felbermayr(2022)
EU	93.5	9.7	2014	Frunza(2016)
EU	50.0	5.4	2013	European Council(2020)
EU	49.0	5.4	2011	EY(2015)
EU	18.0	2.3	2009	Borselli(2011)
EU	25.0	3.2	2009	Ainsworth(2011)
EU	23.0	2.9	2006	Borselli(2011)
EU	14.8	1.9	2005~2006	OCS SPF Finances Belgique(2007)
벨기에	0.03	0.1	2011	Cour de comptes(2012)
독일	14.0	6.9	2014	Frunza(2016)
영국	0.6	0.3	2016~2017	HMRC(2018)

EU의 부가가치세 탈루 규모 추정치의 범위는 매우 크다. 작게는 13억유로에서 많게는 약 935억유로까지 추정되고 있다. 앞서 유럽 경찰이 추정한 500억유로는 이 추정치들의 중간값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각 국가별 추정치들을 보면, 벨기에의 경우 탈루 세액은 약 0.3억유로이고, 독일은 140억유로, 영국은 6억유로로 추정되고

있다. 비중으로 살펴보면 EU는 전체 부가가치세수 대비 탈루 규모는 약 0.1%에서 9.7%까지로 추정되며, 벨기에는 0.1%, 독일은 6.9%, 영국은 약 0.3%로 추정된다.

EU 국가들은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매입자 납부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자는 논의와 일부 탈루가 심한 항목에 대해 주로 B2B 거래에 대해 선별적으로 도입하자는 논의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 탈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이 특정 재화 및 용역에 현재 매입자 납부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매입자 납부제도의 도입이 인과적으로 부가가치세 탈루를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대한 실증 연구 결과는 부족한 상황이다. 일부 재화 및 용역에 매입자 납부제도를 적용한 이후 부가가치세수의 변화를 시점별로 살펴보면 〈표 II-3〉과 같다.

〈표 II-3〉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이후 유럽 주요 국가의 부가가치세수 변화

(단위: %, 연도)

국가	적용 재화 및 용역	제도 도입 시기	연간 부가세수(GDP 대비 비율)	
프랑스	가스 및 전기	2005	7.2	2005
			7.1	2006
루마니아	전기	2013	8.1	2013
			7.6	2014
오스트리아	가스 및 전기	2014	7.6	2014
			7.6	2015
덴마크	가스 및 전기	2015	9.4	2015
			9.5	2016
이탈리아	가스 및 전기	2015	6.1	2015
			6.1	2016
독일	가스 및 전기	2013	7.0	2013
			6.9	2014
영국	가스 및 전기	2014	6.7	2014
			6.8	2015
체코	가스 및 전기	2016	7.4	2016
			7.7	2017
아일랜드	가스 및 전기	2016	4.7	2016
			4.5	2017
폴란드	귀금속	2013	7.0	2013
			7.1	2014
크로아티아	귀금속	2013	12.6	2013
			12.6	2014

〈표 Ⅱ-3〉의 계속

국가	적용 재화 및 용역	제도 도입 시기	연간 부가세수(GDP 대비 비율)	
오스트리아	귀금속	2014	7.6	2014
			7.6	2015
에스토니아	귀금속	2014	8.5	2014
			9.1	2015
독일	귀금속	2014	6.9	2014
			6.9	2015
슬로바키아	귀금속	2014	6.6	2014
			6.8	2015
헝가리	귀금속	2015	9.6	2015
			9.3	2016
스페인	귀금속	2015	6.5	2015
			6.5	2016
체코	귀금속	2015	7.3	2015
			7.4	2016
라트비아	귀금속	2017	8.0	2017
			8.4	2018
오스트리아	온실가스 배출권	2010	7.7	2010
			7.5	2011
벨기에	온실가스 배출권	2010	6.9	2010
			6.9	2011
핀란드	온실가스 배출권	2010	8.3	2010
			8.8	2011
덴마크	온실가스 배출권	2010	9.5	2010
			9.6	2011
독일	온실가스 배출권	2010	7.0	2010
			7.0	2011
아일랜드	온실가스 배출권	2010	6.0	2010
			5.7	2011
룩셈부르크	온실가스 배출권	2010	6.5	2010
			6.7	2011
영국	온실가스 배출권	2011	6.0	2010
			6.8	2011
체코	온실가스 배출권	2011	6.9	2011
			7.0	2012
그리스	온실가스 배출권	2011	7.3	2011
			7.2	2012
헝가리	온실가스 배출권	2011	8.4	2011
			9.1	2012

〈표 Ⅱ-3〉의 계속

국가	적용 재화 및 용역	제도 도입 시기	연간 부가세수(GDP 대비 비율)	
프랑스	온실가스 배출권	2011	6.8	2011
			6.8	2012
네덜란드	온실가스 배출권	2011	6.4	2011
			6.4	2012
폴란드	온실가스 배출권	2011	7.8	2011
			7.1	2012
루마니아	온실가스 배출권	2011	8.6	2011
			8.3	2012
슬로바키아	온실가스 배출권	2011	6.7	2011
			6.0	2012
슬로베니아	온실가스 배출권	2011	8.1	2011
			8.0	2012
스웨덴	온실가스 배출권	2011	9.0	2011
			8.9	2012
포르투갈	온실가스 배출권	2010	8.1	2011
			8.3	2012
크로아티아	온실가스 배출권	2013	12.6	2013
			12.6	2014
이탈리아	온실가스 배출권	2015	12.8	2015
			12.9	2016
독일	휴대폰 공급	2011	7.0	2011
			7.0	2012
이탈리아	휴대폰 공급	2011	6.0	2011
			6.0	2012
오스트리아	휴대폰 공급	2012	7.7	2012
			7.7	2013
네덜란드	휴대폰 공급	2013	6.4	2013
			6.4	2014
슬로바키아	휴대폰 공급	2014	6.6	2014
			6.8	2015
덴마크	휴대폰 공급	2014	9.4	2014
			9.4	2015
폴란드	휴대폰 공급	2015	7.0	2015
			7.2	2016
체코	휴대폰 공급	2015	7.3	2015
			7.4	2016
라트비아	휴대폰 공급	2016	8.1	2016
			8.0	2017

〈표 Ⅱ-3〉의 계속

국가	적용 재화 및 용역	제도 도입 시기	연간 부가세수(GDP 대비 비율)	
루마니아	휴대폰 공급	2016	6.4	2016
			6.2	2017
네덜란드	게임콘솔, 태블릿 PC	2013	6.4	2013
			6.4	2014
오스트리아	게임콘솔, 태블릿 PC	2014	7.6	2014
			7.6	2015
덴마크	게임콘솔, 태블릿 PC	2014	9.4	2014
			9.4	2015
독일	게임콘솔, 태블릿 PC	2014	6.9	2014
			6.9	2015
스페인	게임콘솔, 태블릿 PC	2015	6.5	2015
			6.5	2016
체코	게임콘솔, 태블릿 PC	2015	7.3	2015
			7.4	2016
폴란드	게임콘솔, 태블릿 PC	2015	7.0	2015
			7.2	2016
이탈리아	게임콘솔, 태블릿 PC	2016	6.1	2016
			6.3	2017
라트비아	게임콘솔, 태블릿 PC	2016	8.1	2016
			8.0	2017
루마니아	게임콘솔, 태블릿 PC	2016	6.4	2016
			6.2	2017

자료: Butu et al.(2020), pp. 399~403.

가스 및 전기, 귀금속, 휴대폰 등 유형의 재화는 물론 온실가스 배출권과 같은 무형의 거래에 대해서도 매입자 납부제도를 적용하는 국가들이 상당수다. 가스 및 전기의 경우 대체로 2010년대 중반에 여러 국가에서 도입하였으며, 귀금속의 경우도 비슷한 시기에 도입하였다. 온실가스 배출권과 휴대폰에 대한 매입자 납부제도의 적용은 2010년대 초반에 주로 일어났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도가 도입되기 직전 연도와 도입되고 난 직후 연도의 연간 부가가치세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일부 국가들은 제도의 도입 이후 부가가치세수의 비중이 크게 변한 국가들도 있다.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의 경우 2014년 이후 부가가치세수의 비중이 0.6%p 증가하였다. 이러한 비중의 증가는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만의 효과로 평가

하기는 어렵다. 2015년부터 개인 소득세와 법인 소득세에 대한 세율이 1%p씩 감소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수의 비중이 증가한 요인이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루마니아의 경우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부가가치세수 비중이 0.5%p 감소하였다. 이 역시 매입자 납부제도만의 효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2014년부터 루마니아 정부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율(9%) 적용 품목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기본적인 통계 자료로 매입자 납부제도의 효과를 정확히 식별하기는 어렵다. 또한 기본 통계 자료를 통해서는 매입자 납부제도가 도입된 이후 부가가치세수가 크게 변화한 것을 대체로 확인하기 어렵다. 매입자 납부제도는 단기적으로는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몇몇 국가들의 경우 그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특정 분야에 도입된 매입자 납부제도로 인해 오히려 다른 부문에서의 탈루가 증가하거나,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다른 국가에서 탈루가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되기도 한다(Butu et al., 2020). 다만 이 모든 분석 및 추정치들이 제도의 효과를 정확히 식별한다고 보기 어려워 아직까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2. 영국

영국은 1973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다. 1974년부터 1978년까지 금(Gold supply)은 부가가치세 대상으로 대중에게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었다. 그러다 데쳐(Thatcher) 정부가 들어선 1979년에 사인 간의 금 거래를 자유화하면서 금화(gold coin)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였다. 반면 금 스크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는데 표준 부가가치세율은 계속 인상되었다(8%에서 15%). 비슷한 속성을 갖는 금화와 금지금에 대한 다른 과세 체계는 1980년대에 들어 금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탈루의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였다(Lashmar and Hobbs, 2018).

영국의 부가가치세 탈세의 대표적인 경로는 앞서 언급한 귀금속 부가가치세 탈루 방식과 유사하다. 구체적인 예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영국의 금괴 회사에서

10만파운드 가치의 금을 매입한다. 금괴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은 아니다. 그런 다음 매입한 금을 녹인 후 매입한 금 가격보다 조금 낮은 가격으로, 예를 들어 9만 8천파운드의 공급가액으로 시장에 유통한다. 여기에 15% 부가가치세를 합친 11만 2,700파운드의 공급대가가 최종 판매가격이 된다. 이 거래에 참여한 사업자는 여전히 9만 8천파운드에 대한 부가가치세 1만 4,700파운드는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과세 당국이 수상한 거래를 적발하기 전까지 이러한 형태의 거래를 지속하여 수백만파운드의 부가가치세를 탈루한다. 과세 당국이 이러한 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조사하기까지 평균 6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의 지연을 교묘히 이용하는 것이다. EU의 대표적인 사기 형태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영국에서 귀금속 관련 부가가치세 탈루 문제가 본격적으로 주목을 받은 것은 1981년 말부터이다.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소위 '폭탄업체'가 이때부터 성행하기 시작하였다. 부가가치세 탈루 범죄는 영국의 범죄 유형의 변화와 그 시기를 같이한다. 1960년대부터 심각한 사회 문제였던 무장 강도 등의 범죄가 감소하는 대신 이러한 범죄에 가담하였던 단체들이 금 거래 시장에서의 부가가치세 탈루 범죄에 가담하기 시작하면서 부가가치세 탈루 문제는 크게 부각되기 시작한다. 무장 강도에 대한 정부 및 민간의 대비 강화와 보안 산업의 기술 발전이 무장 강도의 유인을 줄였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형태의 재산 범죄에 대한 유인이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 탈루 과정에 이러한 범죄자들의 가담이 증가한 것이다. 특히 무장 강도에 가담하였던 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금, 은, 귀금속 등의 세공 기술을 배워오면서 귀금속 관련 부가가치세 범죄의 증가에 크게 기여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사회에서 관찰되었다.

1981년 말에는 영국 세관이 금 거래 시장에서 세금 징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나 금 거래 시장의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어려웠고 탈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1982년에는 이러한 탈루를 막기 위해 소위 'Argonaut', 'Finger', 'Leonard', 'Ernie' 등의 이름으로 불리는 고강도의 작전을 세무 당국이 진행하였다. 이러한 고강도 작전을 통해 12개의 부가가치세 탈루 사건을 적발하였다. 이 중 7건은 무장 강도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가담한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2년부터 정부는 금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시 부과하였다. 이렇게 되자 부가가치세 탈세에 가담하였던 범죄자들은 부가가치세가 없거나 부가가치세율이 매우 낮은 국가 등에서 금화를 밀수입하는 등 대체 방법을 찾았다. 이런 밀수입의 성행은 비단 금화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쥬얼리 보석 등도 동일한 수법으로 적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대두되었다. 당시 금화 등을 수입할 수 있었던 대상 국가 및 영토는 스위스, 건지(Guernsey), 리히텐슈타인(Liechtenstein) 등이었다. 금화를 매입하는 매입처만 달라졌을 뿐 유사한 형태의 부가가치세 탈루는 지속된 것이다.

탈루를 막기 위해 정부 당국은 금화 거래 및 부가가치세 탈루와 관련된 범죄자들을 강력 처벌하고 감시하였다. 대표적인 부가가치세 탈루범 중 한 명인 Roy Garner는 징역 22년형을 선고받기도 했다(Jennings et al., 1991). 이러한 정부의 강력 대응책으로 인해 그 이후 대부분의 부가가치세 탈루 사기범들은 금 거래 시장에서의 범죄를 줄이고 스페인을 경유한 마약 밀반입으로 방향을 틀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 거래 시장에서의 부가가치세 탈루 문제가 매년 지속되자 1993년 4월 영국 정부는 부가가치세 금 거래 탈루를 막기 위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자 혹은 부가가치세 등록 의무가 있는 사업자 간의 거래에 대한 특별 회계 및 지불 제도를 도입하였다. 일종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적용하여 사업자 간의 거래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책임을 구매자로 전환한 것이다. 매입자 납부제도로 전환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1993년 발생한다. 과세 당국은 1993년 3월 금과 관련한 거래에서 약 1,500만달러 규모의 부가가치세 탈루를 포착한 것이다. 이는 당시 영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금 거래 사기였다. 범죄에 가담한 사업자들은 약 9천만달러 상당의 금을 벨기에에서 현지 부가가치세 1%를 납부하고 합법적으로 매입한 후 금을 녹여 영국 금 거래업자들에게 판매하면서 17.5%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과세 관청에 납부하지 않는 형태로 탈루 범죄를 확대했다. 1993년 EU 역내 단일 시장의 도입은 영국 내에서도 금을 공개적으로 다른 역내 국가로부터 반입하고 국가 간 세율의 차이 등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탈루 범죄를 더 자극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1993년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통해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고자 하였으나, 제도의 변화 전후로 부가가치세의 GDP 대비 비율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1992년의 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은 6%였고, 제도 변화한 이후인 1994년과 그 이후도 6%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확하게 제도의 효과를 식별하는 것은 역시 자료상의 제약으로 한계가 있으나 명시적으로 부가가치세수의 개선이 뚜렷하게 관찰된 것은 아니다.

〈표 Ⅱ-4〉 영국 GDP 대비 부가가치세수 비율

(단위: %)

연도	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율
1992	6.0
1993	6.0
1994	6.0
1995	5.9
1996	6.0
1997	6.1
1998	6.0
1999	6.1
2000	6.0
2001	6.0
2002	5.9
2003	6.1
2004	6.1
2005	5.8
2006	5.9
2007	5.8

자료: 영국 국세청, https://www.imf.org/external/np/seminars/eng/2012/asiatax/pdf/thackray.pdf. 검색일자: 2024. 6. 13.

참고로 영국의 부가가치세 갭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22년 기준 실제로 걷혔어야 할 부가가치세수 대비 약 5.4% 정도가 부가가치세 탈루, 조세회피 등으로 인해 걷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부가가치세 갭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더불어 '폭탄업체' 등 행방불명 사업자 사기로 인한 부가가치세 갭 역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표 Ⅱ-5〉). 매입자 납부제도에 따른 제도의 효과를 정확히 식별할 수는 없으나 최근 들어 행방불명 사업자로 인한 부가가치세 탈루는 크게 감소한 것이 확인된다. 다만

전반적으로 세정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부가가치세 탈루 자체가 감소함에 따라 추세적으로 나타난 변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영국의 매입자 납부제도의 실효성을 본고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

〈표 Ⅱ-5〉 행방불명 사업자로 인한 부가가치세 갭 추정치

(단위: 이론적 부가가치세수 대비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행방불명 사업자로 인한 갭	3.6	2.6	1.4	1.6	0.8	0.7	0.7	0.6	0.6	0.6	0.4
전체 부가가치세 갭 대비 행방불명 사업자로 인한 갭	33.3	28.3	11.1	15.5	8.9	7.5	7.4	6.0	6.7	7.1	4.5

자료: 영국 국세청, "https//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ukgwa/20190509050859/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measuring-tax-gaps-tables", https://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ukgwa/20190509050859/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measuring-tax-gaps-tables., 검색일자: 2024. 6. 19.

[그림 Ⅱ-3] 영국의 부가가치세 갭 연도별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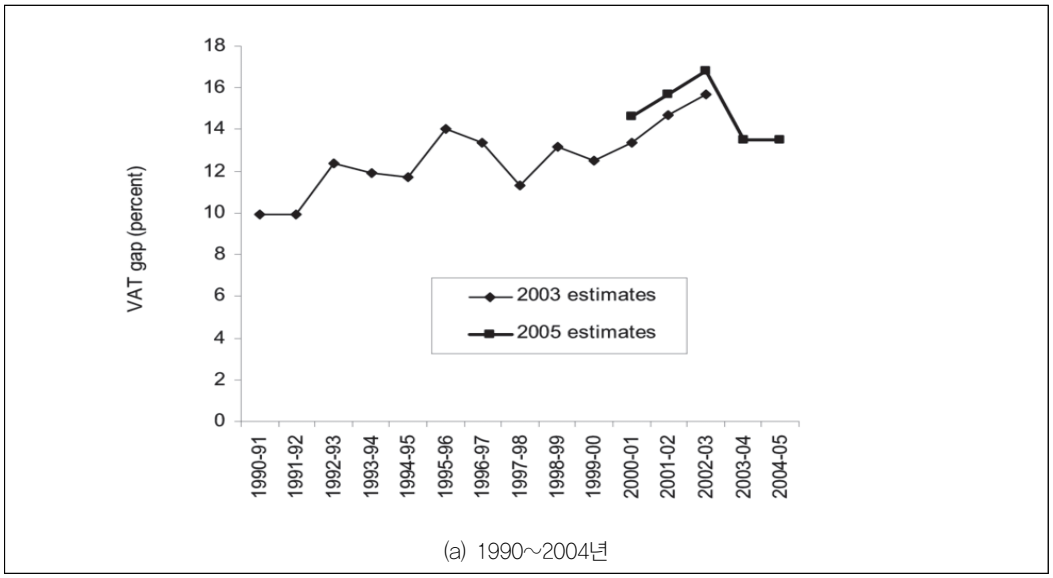

(a) 1990~2004년

[그림 Ⅱ-3]의 계속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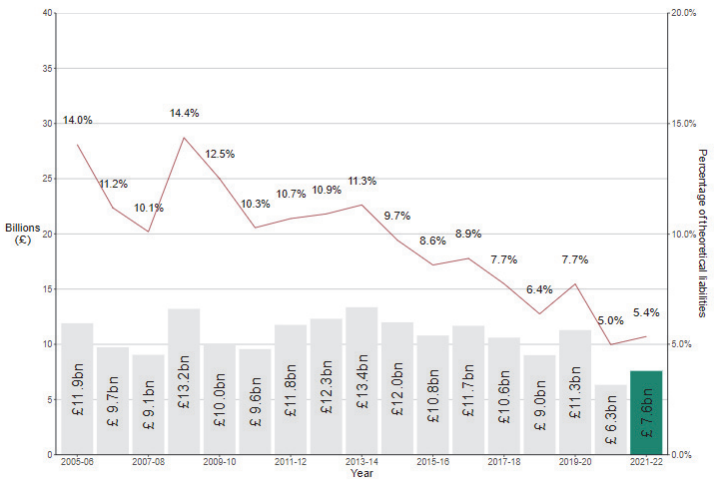

(b) 2005~2021년

자료: Keen and Smith(2006), pp. 17~18, 영국 국세청,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measuring-tax-gaps/2-tax-gaps-vat, 검색일자: 2024. 6. 12.

영국의 사례로부터 두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최근 들어 행방불명 사업자로 인한 부가가치세 탈루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과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방불명 사업자로 인한 부가가치세 문제는 존재하며, 매입자 납부제도 외에도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을 통해 부가가치세 탈루 문제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3. 호주

호주의 금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탈루 역시 EU의 부가가치세 회전목마 사기의 거래 형태와 유사하다. 호주의 부가가치세제(GST)는 투자 등급의 금괴 또는 골드바 및 동전 등으로 새겨진 금은 통화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반면에 금 스크랩, 혹은 훼손된(defaced) 금, 쥬얼리에서 추출된 금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금, 쥬얼리 보석 등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탈세는 이러한 부가가치세제의 금에 대한 이질적 과세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벌어진다. 범죄에 가

담한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괴를 구매하고 그것을 훼손하여 금 스크랩 등의 형태로 정제업체에 판매한다. 이러한 금 스크랩 등의 판매 과정에서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 매출을 올린다. 매출을 올린 후 이 사업자들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다.

이에 더해 매출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입한 금괴 등을 GST의 중고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상태로 구입하였다고 허위 보고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다. 또한 금 스크랩 등을 매입한 정제업체들은 정상적인 거래 과정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국세청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거래 과정이 반복되어 동일한 금이 계속해서 순환하여 매출 부가가치세의 누락과 매입세액의 환급으로 인한 세수 손실이 계속 발생하였다.

2010년부터 호주에서는 동일한 금이 금 거래 시장에서 순환되어 거래되기 시작하였는데, 각각의 순환 과정에서 범죄에 가담한 사업자들은 국세청에 보고하지 않은 10%의 부가가치세를 본인들이 가져갔고, 매입세액공제까지 받았다. 실물은 계속 순환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가운데 부가가치세 탈루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시장 자체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졌다. 2010년 이후 금 정제활동 사업이 빠르게 증가하였는데 호주 국세청은 이러한 산업의 빠른 증가가 부가가치세 탈루와 연계되어 있을 것을 의심하였다. 결국 호주 국세청은 일부 정제업체가 부가가치세 탈루에 연루된 점을 포착하고 연루된 정제업체들의 과거 부가가치세 환급을 징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다만 최근에는 이 사건에 연루된 일부 정제업체들이 부가가치세 탈루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세무 당국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호주의 금 거래 시장에서의 부가가치세 탈루는 과거 우리나라의 금괴 부가가치세 탈루 거래 형태와 유사한 구조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매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업체는 [그림 1-1]에서 폭탄업체에 해당하며 정제업체들은 2차 도매 사업자들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폭탄업체들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고, 일부 정제업체들이 이 거래 과정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면서 금 순환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탈루가 계속되었던 것이다. [그림 1-1]은 수출 과정에 사용될 금을 국내 거래용으로 둔갑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라면, 호주의 부가가치세 주된 탈루 과정은 호주 정부가 밝히고 있듯이, 수출 및 영세율의

거래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를 이용한 탈루로 보인다. 결국 호주에서의 부가가치세 탈루의 핵심은 정부의 귀금속 과세/면세에 대한 왜곡적인 해석과 이를 이용한 조작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호주 세무 당국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금지금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탈루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하였다. 금지금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당 환급 규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6년간 약 7억호주달러(약 6,326억원)로 추정된다. 참고로 연간 호주의 부가가치세수는 약 70조원에서 80조원이다.

호주는 2017년 금융범죄 태스크포스(Serious Financial Crime Taskforce, SFCT)가 귀금속 정제업체들을 강도 높게 조사한 이후 2017년 4월 1일부터 금, 은, 플래티넘 스크랩 등을 구매하는 정제업자, 거래자 및 기타 사업자들에 대해 매입자 납부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림 II-4]는 호주의 부가가치세수의 변화를 연도별로 보여준다. 매입자 납부제도가 도입된 2017년 이후 부가가치세수가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부가가치세수의 큰 변화를 관찰하기는 어렵다. 기존에 부가가치세 부당 환급 등의 탈루 규모는 연간 기준 부가가치세수의 약 0.1~0.2%에 그치기 때문에 이를 통한 부가가치세수의 주목할 만한 변화는 감지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는 실제로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탈루 방지를 통한 세수 개선 효과는 크게 관찰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호주 세무 당국은 매입자 납부제도가 도입된 이후 금의 순환 거래를 통한 부가가치세 탈루는 더 이상 적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기준 금지금, 귀금속 등의 부가가치세 탈루 규모를 호주 당국이 집계한 통계를 찾기는 어렵다.

[그림 Ⅱ-4] 호주 부가가치세수 연도별 변화

(단위: 백만호주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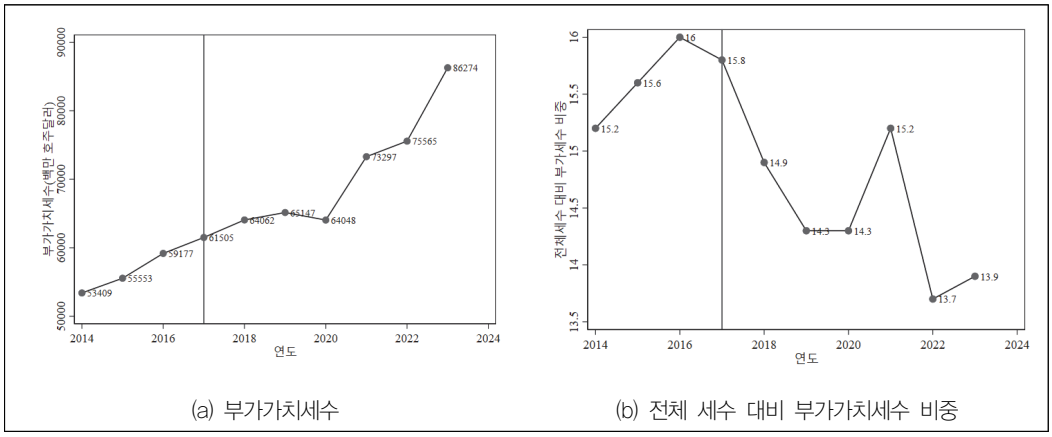

(a) 부가가치세수 (b) 전체 세수 대비 부가가치세수 비중

자료: 저자 작성

4. 일본

일본 정부도 특정 재화 및 용역에 대해 매입자 납부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일본 역내에서 거래되는 B2B 전자적 용역, 연예, 스포츠 용역 등 외국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 중이다. 특히 국경 간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매입자 납부제도를 적용중이다. 예를 들어 해외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가 일본 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책임이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일본 내 기업에 있다. 다만 매입자 납부제도의 적용 범주에 금지금, 귀금속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금 스크랩, 귀금속 등에 대해서는 일반 부가가치세 원칙을 적용한다. 따라서 금, 금지금, 귀금속 등을 매입할 때 표준 부가가치세율 10%를 부과한다. 금괴 등을 일본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것이 일본의 금 거래 시장에서 부가가치세 탈루가 문제되지 않기 때문은 아니다. 일본 역시 금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탈루 현상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금과 관련한 밀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그림 Ⅱ-5]). 금과 관련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탈루와 관련한 범죄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50% 가까이 증가하여 약 720건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동안 탈루 세액은 약 70% 이상 증가한 약 15억 4천만엔으로 추정된다. 2014년에는

부가가치세율이 5%에서 8%로 인상되었는데, 이에 따라 탈루 세액의 규모도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일본의 연간 부가가치세수는 약 24조엔 정도로 추정되어, 추정된 탈루 세액의 경우 가파른 증가세에 있다 하더라도 전체 부가가치세수 대비 적은 수준이다. 일본의 부가가치세 갭에 대한 통계 자료가 구축되지 않아 규모에 대한 대략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의 금 거래 관련 탈루는 금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홍콩과 같은 국가를 통해 국내로 반입하고 국내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형태로 탈루가 진행된다. 즉 금의 밀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부가가치세 탈루의 96%는 동아시아의 다른 지역에서 온 항공기 승객을 이용하여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주로 밀수한 상대 국가는 한국, 중국, 대만 등으로 파악된다. 일본의 부가가치세율이 5%에서 8%로 인상된 2014년 이후, 금 밀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19년 10월부터 일본의 부가가치세율이 5%에서 10%로 인상되어 금 밀수의 양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이에 따라 탈루 세액의 크기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Ⅱ-5] 일본 금 거래 관련 탈세 현황

(단위: %, 십억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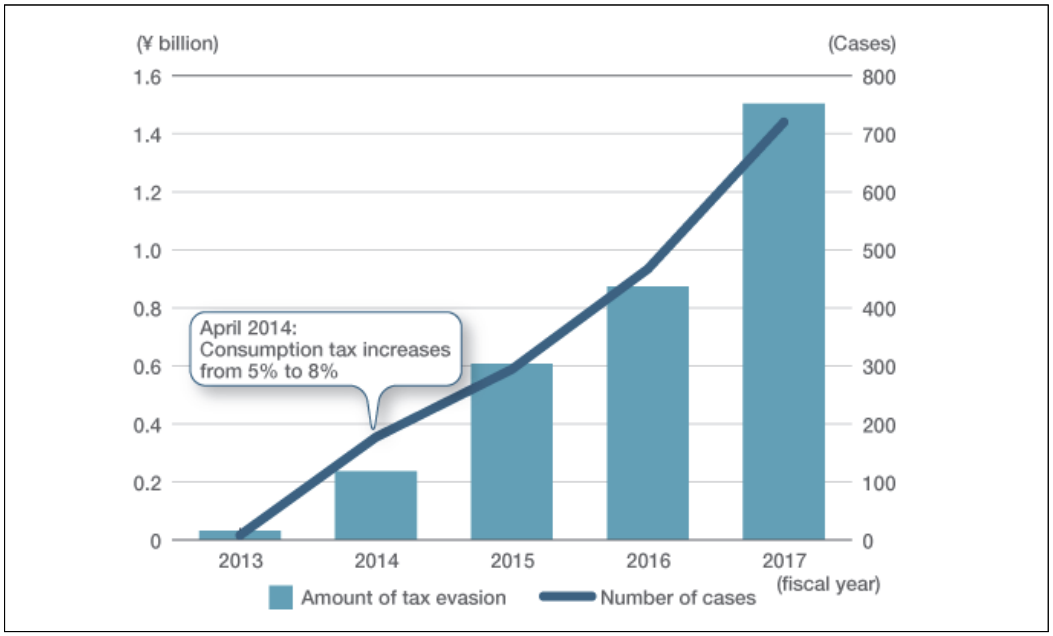

자료: 일본 국세청, https://www.nippon.com/en/features/h00343/. 검색일자. 2024. 5. 6.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가가치세제의 근본적인 정책 변화를 유도하기보다는 공항에서 금속 탐지기의 수를 늘리는 등의 국경 강화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2017년에 일본 정부는 세관에서의 검사 강화, 처벌 강화, 정보 수집 및 분석 강화 등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동아시아 등 다른 국가들에서의 금 밀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국제적인 정보 교환과 공조를 통해 금 밀수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중요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금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탈루가 주로 밀수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파악하고 이를 차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 거래 시장에서의 행방불명 사업자 혹은 회전목마 사기와 같은 범죄는 적발된 사례를 찾기 어렵다.

[그림 Ⅱ-6] 일본의 금 밀수 상대국 현황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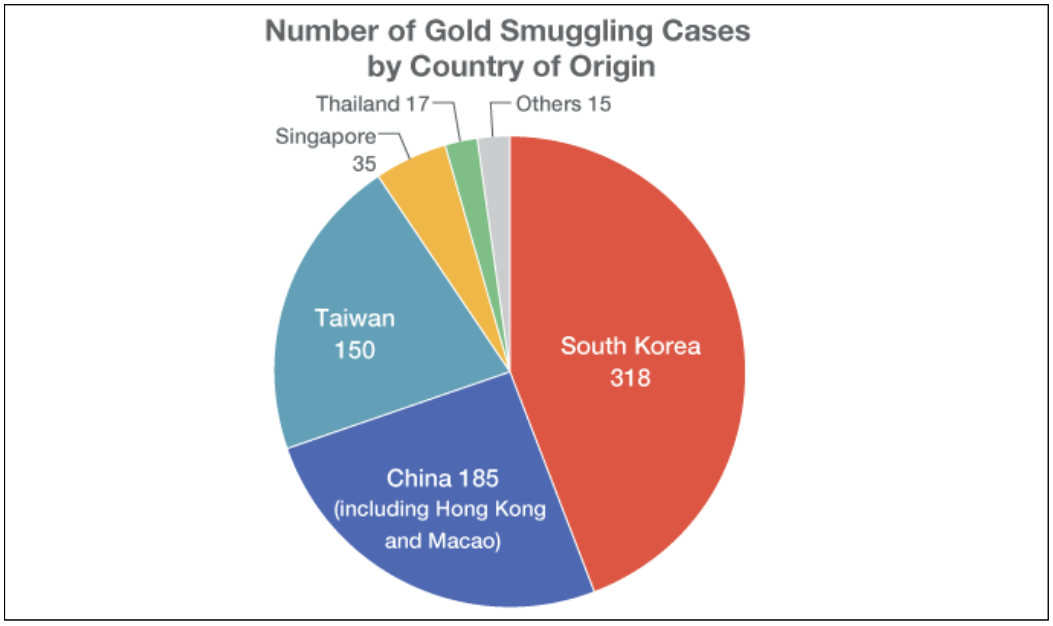

자료: 일본 신문기사 인용, https://www.nippon.com/en/features/h00343/, 검색일자. 2024. 5. 6.

5.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1994년부터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는데 금괴와 같은 특정 귀금속은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투자용 금괴 바(투자 등급의 금, 은, 백금 등)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금 스크랩 등의 경우 표준 부가가치세율인 9%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싱가포르는 2024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율을 8%에서 9%로 인상하였다. 금괴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정책 덕분에 싱가포르는 금 투자자 및 거래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이며, 세계적인 귀금속 거래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금 시장 규모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편에 속한다. 2022년 기준 싱가포르는 131억달러의 금을 수출하였고, 이는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수출국은 캄보디아,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다. 수입 규모는 175억달러이며, 주요 수입 대상국은 스위스, 일본, 호주, 미국, 영국 등이다. 금 거래 시장의 규모가 크고 싱가포르의 주요 산업이지만, 금괴와 금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구조가 다름에 따라 부가가치세 탈루의 잠재적 위험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싱가포르 세무 당국은 최근 투자용 귀금속 금괴 바와 금 스크랩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탈루 상황에 대해 주의 깊게 추적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탈루 범죄자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투자용 금괴 바(2012년 10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면세)를 녹이거나, 상처를 내거나, 절단하여 스크랩 금괴 바로 변형시킨 후 유통시켰다. 그 이후 이를 다음 거래 단계의 사업자에게 판매한다. 이렇게 손상된 금괴 바를 매입한 사업자는 금 스크랩 등을 다음 거래 단계의 보석 판매상, 금 거래 사업자 등에게 팔아 넘긴다. 보석 판매상, 금 거래 사업자 등은 매입한 금 스크랩 등을 수출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거나 국내 소비자에게 유통시킨다. 대부분의 부가가치세 탈루는 수출이 포함된 거래 과정에서 이 거래 사슬의 맨 처음에 있는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라지면서 발생한다. 앞서 수차례 살펴본 행방불명 사기와 동일한 방식이다.

싱가포르 정부가 구체적인 탈루 규모를 밝히거나 추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금괴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행방불명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규모가 약 1조 6,500만싱

가포르 달러(약 1조 2천만미국달러)로 집계하였다. 이 과정에서 허위 거래 업체를 통해 거래 과정을 복잡하게 하여 과세 당국의 추적을 피하려고 한 정황도 포착하였다.

금 거래 시장에서 이러한 범죄들이 발각되었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금 거래에 대한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하지는 않았다. 싱가포르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매입자 납부제도를 특정 B2B 수입 용역에 적용하고 있다. 싱가포르 거주자가 해외 공급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때 매입자 납부를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금괴와 같은 귀금속 거래에 대해서는 매입자 납부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미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귀금속 거래 허브로서의 장점이 제도의 변화로 인해 퇴색되는 것을 우려하기도 한다.

대신 싱가포르 정부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였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싱가포르 정부는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 거래 계획의 일부를 알고 있었거나 인지하고 있어야 했던(should have known)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적용하였다. 소위 "인지 원칙(knowledge principle)"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 원칙은 유럽 사법 재판소의 판례에서 유래하였다.

사기 거래가 포함된 거래 사슬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거래가 부당 거래의 일부인지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인지 원칙"은 해당 조치를 고려하여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원칙은 거래 사업자가 사기와 관련된 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필요한 주의를 기울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합리적인 조치란 거래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해당 거래가 사기 거래의 일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즉 거래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한 조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증명하면, 과세 당국은 "인지 원칙"을 적용할 때 거래자의 주의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이는 거래자가 의도적으로 사기 거래에 연루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표 II-6〉 부당 거래 인지 위험 요인 지표

1. 해당 산업에서 경험이 적은 신규 공급업체가 고가의 거래를 제안하는 경우
2. 대량 거래가 매우 빠른 회전율로 발생하여 비현실적으로 이윤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공급자와 매입자 사이에 고정된 금 가격으로 연속적인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사실상 위험 요인 없이 거래되며 가격 변동성에 노출되지 않거나 매우 적게 노출되는 경우
4. 보통과 다른 신용 조건을 제공한 경우. 예를 들어 공급업체가 먼저 금을 제공한 후 해당 금을 고객에게 판매한 이후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5. 정보가 없는 중개인 등에 의해 추천된 거래
6.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상태 혹은 규모의 금 스크랩의 경우. 예를 들어 대량으로 절단된 평태 혹은 금 스크랩이 포함된 거래
7. 거래하려는 상대 업체 혹은 중개인이 금 공급원에 대한 질문에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8. 기존 공급업체 혹은 고객과의 거래에서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거래량이나 거래 가치가 크게 증가하거나 또는 상품 거래의 성격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

자료: 저자 정리

싱가포르 정부는 사업자들이 부당 거래에 대한 인지를 보다 수월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여덟 가지 지표를 권고 사항으로 제시한다(〈표 II-6〉). 첫째, 해당 산업에서 경험이 적은 신규 공급업체가 고가의 거래를 제안하는 경우, 둘째, 대량 거래가 매우 빠른 회전율로 발생하여 비현실적으로 이윤이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셋째, 공급자와 매입자 사이에 고정된 금 가격으로 연속적인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사실상 위험 요인 없이 거래되며, 가격 변동성에 노출되지 않거나 매우 적게 노출되는 경우, 넷째, 보통과 다른 신용 조건을 제공한 경우, 예를 들어 공급업체가 먼저 금을 제공한 후 해당 금을 고객에게 판매한 이우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다섯째, 정보가 없는 중개인 등에 의해 추천된 거래, 여섯째, 시장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상태 혹은 규모의 금 스크랩의 경우, 일곱째, 거래 하려는 상대 업체 혹은 중개인이 금 공급원에 대한 질문에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여덟째, 기존 공급업체 혹은 고객과의 거래에서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한다.

〈표 Ⅱ-7〉 부당 거래에 대한 실질적 대응

1. 거래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보, 과거 거래 기록 등을 요청하여 사업체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거래 상대방의 사업 장소를 실제 방문하기
2. 금 스크랩 등의 거래 가격이 지나치게 낮거나 대량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있는지, 고객이 직접 거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단계에서 사업자를 끼고 거래해야 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기
3. 지불 수단 및 계획이 지나치게 유리하게 설정된 것인지 확인하기. 최종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만 거래 대금을 정산하도록 하는 등의 유리한 조건이 제시되는지 확인하기
4. 금 스크랩 바가 진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금 스크랩 바의 원천 등에 대해 조사하기
5. 중개인이 합법적이고 신뢰할 만한지 검토하기. 예를 들어 과거의 거래 성사 경험, 그리고 왜 이 거래를 주선하는지 등에 대해 조사하기
6. 거래 과정의 실질적인 변화에 특별한 이유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기존 공급업체와 고객과의 거래 시에 비정상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자료: 저자 정리

싱가포르 과세 당국은 이에 더해 실질적 대응 방안인 합리적인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한다(〈표 II-7〉). 첫째, 거래 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정보, 과거 거래 기록 등을 요청하여 사업체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을 요청한다. 둘째, 거래 조건과 가격이 시장 가격과 비교하여 비정상적으로 낮거나 높은 경우 이에 대해 철저히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셋째, 지불 수단 혹은 결제와 관련하여 비정상적인 행태가 관찰되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넷째, 금 재화의 진위 여부 판별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고, 다섯째, 중개인이 합법적이고 신뢰할 만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거래 상대방의 신뢰성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 문서를 요구할 수 있다. 여섯째, 거래 과정의 실질적 변화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래와 관련한 모든 문서와 기록을 정확하게 보관하고, 거래의 모든 세부사항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금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의 부당 환급 및 탈세가 공공의 재정에 대한 위협은 물론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추가적인 대책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을 도입하였다. 금 지금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당 환급을 계획하거나, 공모한 자, 그리고 그 조직원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만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부당 거래에 참여한 사업체,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싱가포르 정부는 현재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금 스크랩 등에 대한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 않고, 이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6. 독일

독일은 투자용 금과 귀금속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구조가 다르다. 금의 형태와 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구조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독일은 투자용 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 산업용 금, 귀금속 등에 대해서는 표준 부가가치세율 19%를 적용한다. 투자용 금은 순도 99.5% 이상인 금괴, 순도 90% 이상인 금화를 포함한다. 산업용 재료로 사용되는 금, 금 스크랩, 금지금 등은 표준 부가가치세율이 적용된다.

독일 역시 다른 EU 국가들과 유사하게 금 거래 시장에서의 부가가치세 탈루 문제가 꾸준히 적발되었다. 주로 회전목마 사기 혹은 행방불명 사업자 사기 형태로 나타났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회전목마 사기 형태의 부가가치세 탈루가 많았다. 여러 국가를 거치면서 금을 반복적으로 거래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식이다. 2010년대 들어서는 행방불명 사업자 사기 형태가 더 많아졌다. 2016년에는 독일을 비롯해 오스트리아, 벨기에,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및 영국 등에서 18명이 체포되었고 약 320만유로의 부가가치세 탈루가 적발되었다.

독일은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고자 일부 품목에 대해 매입자 납부제도를 적용하고 있다(〈표 II-8〉). 적용 품목에는 금 스크랩을 포함한 스크랩 금속, 건설 서비스, 통신 장비, 전자제품, 가스, 전기, 냉난방 공급 및 이동 통신 서비스 등이 있다. 하지만 금괴와 같은 귀금속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매입자 납부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했듯이 금괴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독일의 매입자 납부제도는 건설 부문의 국경 간 용역에 적용되면서 시작되었다. 해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를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려워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사업자가 납부하도록 했다. 그 이후 부가가치세 탈루 가능성이 높은 재화 및 용역 분야 중심으로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하였다. 2004년

에는 하청업자와 관련된 특정 건설 작업에 대해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부문에서의 부가가치세 탈루 방지를 위해서 집행한 목적이 크다. 2005년 전기 및 가스 공급의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 장소를 정의하는 EU 지침에 따라 매입자 납부제도를 적용하였다. 2010년에 행방불명 사업자 사기에 따른 부가가치세 탈루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고철, 금, 청소 용역 등에 대해 매입자 납부제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표 II-8〉 독일의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 재화, 용역 및 도입 시점

도입 시점	적용 재화 및 용역
2002. 1. 1.	· 해외 소재한 회사와의 계약 · 담보로 제공된 재화의 인도 · 부동산 거래
2004. 4. 1.	· 하청업체와의 계약
2005. 1. 1.	전기 및 가스 공급(해외 사업자)
2010. 7. 1.	온실가스 배출권
2011. 1. 1.	스크랩 금속, 금
2011. 7. 1.	휴대폰 공급
2013. 9. 1.	전기 및 가스 공급(국내 사업자)
2014. 10. 1.	태블릿, 노트북, 게임 콘솔

자료: Buettner and Tassi(2023), p. 859.

Buettner and Tassi(2023)는 독일의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납세 자료를 이용하여 매입자 납부제도의 도입이 부가가치세 탈루에 미친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매입자 납부제도가 도입된 산업과 도입되지 않은 산업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효과를 추정하였는데,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이후 해당 산업에서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 신고가 급격히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주로 회전목마 사기 형태로 부가가치세 부당 환급을 많이 받아가는 형태의 부가가치세 탈루가 많은 상황에서 매입자 납부제도가 이러한 탈루를 감소시켰다는 것을 밝혔다. 추정 결과, 독일의 전체 부가가치세수의 약 5%가 매입자 납부제도로 인해 확보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의 부가가치세 갭의 연도별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 11%, 2013년 12%, 2014년 11.7%, 2016년 9.4%, 2017년 9.3%, 2018년 9.4%, 2019년 9.0%로 연도별로 큰 변화가 없다 EC(2023). 앞서 〈표 II-8〉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주요 매입자 납부

제도는 2015년 이전에 도입이 되었는데 제도 도입과 연도별 부가가치세 갭 변화에 특별한 상관관계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매입자 납부제도가 적용되는 품목 이외의 부문에서 부가가치세 탈루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고, 매입자 납부제도에 적응한 범죄자들이 여전히 다른 범죄 형태로 탈루를 벌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매입자 납부제도로 부가가치세 탈루가 감소하였다는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7. 프랑스

프랑스는 금 거래와 관련하여 독일과 유사한 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영한다. 금의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과세를 다르게 하고 있다. 투자용 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만, 귀금속 및 보석류, 산업용 금 등에 대해서는 표준 부가가치세율 20%를 적용한다. 투자용 금은 순도 99.5% 이상의 금괴, 순도 90% 이상의 금화를 의미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유럽 전역에서 벌어진 귀금속, 휴대폰 등의 부가가치세 탈루 사건에 프랑스의 범죄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프랑스의 국내 금 시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탈루에 대한 사건 및 통계는 찾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역시 금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탈루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투자용 금을 제외한 금, 귀금속, 금속 스크랩 등에 대해 매입자 납부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도 비거주 해외 공급자와의 거래에 대해 매입자 납부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금 스크랩 등을 비롯하여 전자 통신 서비스, 재활용 및 폐기물, 부동산 거래, 탄소 배출권 거래 등에 대해서도 매입자 납부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표 Ⅱ-9〉 프랑스의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 재화, 용역 및 도입 시점

도입 시점	적용 재화 및 용역
2008.1.1	재활용 및 폐기물, 금속 스크랩 등
2011.1.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2012.4.1	· 전자통신 서비스 · 가스 및 전기
2014.1.1	건설업

자료: EY, Assessment of the application and impact of the optional 'Reverse Charge Mechanism' within the EU VAT system, 2014,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system/files/2016-09/kp_07_14_060_en.pdf 참고하여 저자 정리

프랑스의 부가가치세 갭은 2014년 10.3%, 2015년 9.5%, 2016년 8.8%, 2017년 9.3%, 2018년 8.5%, 2019년 8.6%, 2020년 8.0%로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지만, 큰 폭의 변화가 감지되지는 않는다. 부가가치세율 자체도 큰 변화가 없어 부가가치세 탈루 규모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전후에 따라 부가가치세 갭의 큰 변화를 감지하기는 어렵다.

8.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일반적으로 순도 99.5% 이상의 금괴와 관련이 있다. 반면 이 외의 금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순도 32.5% 이상의 투자용 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면서 매입자 납부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매입자 납부제도는 이 외에도 IT 장비(휴대폰, 게임 콘솔, 노트북, 태블릿 PC 등), 건설 작업, 가스 및 전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재활용 및 폐기물 거래 등에 대해서 매입자 납부를 적용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의 금 거래 시장에서의 부가가치세 탈루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이탈리아 역시 별도로 통계를 집계하고 있지는 않다. 최근에 적발된 부가가치세 사기의 경우를 살펴봐도 가스 거래와 관련된 범죄(2023년, 탈루 규모 약 5,300만유로), 음료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탈루(2024년, 탈루 규모 약 3천만유로) 등이 포함되었지만, 국내 시장에서의 금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탈루 규모에 대한 공식적인 집계 통계는 찾기 어렵다.

Ⅲ. 주요국의 금 거래 부가가치세 탈루 대처 방안

제Ⅱ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금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사기는 유사한 형태로 발생하고, 유사한 부가가치세 구조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EU가 권고하듯, 매입자 납부제도의 도입 등을 통한 대응 방안도 각 국가별로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제Ⅲ장에서는 그러한 대응 방안을 정리하고 요약하고자 한다.

EU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은 금 스크랩, 귀금속 등과 관련된 거래에 매입자 납부제도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탈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이와 같은 조치는 부가가치세 탈루를 일부 막은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다만 특정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만 별도의 제도인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할 경우 표준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다른 재화 및 용역 거래에 부가가치세 탈루 범죄가 전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실제로 통계로도 포착되기도 한다. 단기적으로는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에 따른 행정 및 납세 협력 비용의 증가 역시 단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마지막 단계에서는 결과적으로 매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탈세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도 있음을 앞서 살펴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자 납부제도는 1차적으로 부가가치세 탈루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장점이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매입자 납부제도만으로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대안들이 도입되고 있다.

EU는 2024년 1월 1일부터 금 거래 시장의 부가가치세 탈루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투명성 규정을 도입했다. 이 규정은 EU 회원국의 세무 행정에 결제 정보를 제공하여 전자 상거래에서 특히 발생하기 쉬운 부가가치세 탈루를 더 용이하게 탐지할 수 있게 하였다. 예를 들어 일부 온라인 판매자들은 EU 역내에 실제 사업장을 두지 않고 EU 소비자들에게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면서 EU 역내 어느 국가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매출 세액을 의도적으로 줄여 보고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누수되는 부가가치세수가 커지

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처로 새로운 투명성 규정을 도입한 것이다.

새로운 규정은 은행, 전자 화폐 관련 기관, 결제 기관 등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에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 결제 업체들이 EU 온라인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1월 1일부터 결제 업체들은 국경 간 결제의 수취인을 모니터링하고 2024년 4월 1일부터는 분기당 25건 이상의 국경 간 결제를 받는 이들에 대한 정보를 EU 역내 회원국 세무 당국에 전송해야 한다. 이 정보는 이후 유럽 위원회에 의해 개발된 새로운 유럽 데이터 베이스인 결제 정보의 중앙전자시스템(Central Electronic System of Payment Information, CESOP)에 저장되어 기타 다른 세무 자료와 교차 검증된다. CESOP의 모든 정보는 이후 2010년에 출범한 EU의 부가가치세 탈루 방지 네트워크인 Eurofisc를 통해 각 회원국에 제공된다. 이를 통해 회원국은 자료를 분석하여 부가가치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 특히 EU 역외 사업자를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된다. Eurofisc 연락관은 또한 정보 요청, 감사 또는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 취소와 같은 국가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러한 새로운 규정은 EU 역내 국가 간의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EU의 금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탈루는 개별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매입자 납부제도가 EU 대부분 국가에 도입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가가치세 갭을 비롯한 탈루가 빈번한 것은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에 따라 파생되는 여러 범죄의 통로가 많기 때문이다. EU는 이에 대해 국가 간 정보 공유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제Ⅲ장은 각 국가별 금 거래 부가가치세 탈루 대응을 정리함과 동시에 최근의 논의되는 대응들을 정리한다. 그리고 대응 방안의 정책 효과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도 요약하고자 한다.

1. 선행연구결과

대부분의 국가들이 부가가치세 탈루에 대응하는 대표적인 제도적 방안은 매입자 납부제도라 할 수 있다. 행방불명 사기 사업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

은 이 제도의 가장 주요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선행 연구 결과는 매우 제한적이다. Buettner and Tassi(2023)와 Stiller and Heinemann(2024)의 실증 연구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매입자 납부제도와 유사한 성격의 신용카드사의 대리 납부 제도를 살펴본 연구는 Brockmeyer and Hernandez(2019)가 있고, 매입자 납부 지정기관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Yesegat and Joseph(2017), Majoni(2021), Adu-Ababio et al.(2023) 등이 있다. 매입자 납부 혹은 신용카드 대리 납부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증 연구 결과를 제시한 국내 연구는 저자가 파악한 바로는 없다.

매입자 납부제도 등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가 제한적인 이유는 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계량경제학적으로 매입자 납부제도의 효과를 정확히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본고에서 소개하는 연구들은 잘 구축된 실제 납세 자료를 사용하여 매입자 납부 제도 등 제도 도입의 효과를 식별하기 위해 여러 검증 절차를 철저하게 거친 신뢰할 만한 연구들이라 할 수 있다.

Buettner and Tassi(2023)의 연구는 독일의 부가가치세 납세 자료를 활용하여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독일에서는 에너지, 가스,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산업에 대해 매입자 납부특례를 적용하는데, 이에 대한 실증 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부가가치세 환급 자료를 사용하고 산업간 변이를 활용한 이중차분법을 사용하여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매입자 납부특례를 적용받은 산업의 매입세액공제 건수가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탈루는 부당 환급 등으로 나타나기 마련인데, 이를 살펴보기 위해 모형의 종속변수로 매입세액 공제 건수를 사용하였다.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탈루 방지 효과는 약 2.4%인 것으로 추정하였다. 매입세액공제 이외에도 매출액 등을 활용하여 추정한 결과 비슷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만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매입자 납부특례의 일반균형효과를 고려하면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한 거래가 오히려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Stiller and Heinemann(2024)의 연구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의 무역 거래 자료를 사용하여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그리고 국가 간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시점의 변이를 활용하여 매입자 납부특례의 도입 효과를 살펴

보았다. 이 연구는 납세자료가 아닌 거래 자료를 활용하여 거래의 변화를 추정하여 매입자 납부의 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분석 결과, 매입자 납부 특례로 인해 부가가치세 탈루를 약 75억유로에서 77억유로 감소시켰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 연구는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한 이후 매입자 납부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적으로 살펴본 점이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매입자 납부제도가 이를 도입한 국가에는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지만, 반대로 매입자 납부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부가가치세 탈루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보였다.

Brockmeyer and Hernandez(2019)의 연구는 신용카드사의 대리납부 제도의 효과를 검토하였다. 이들은 코스타리카의 자료를 사용하여 신용카드사 대리납부의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율의 상향 조정 효과를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이와 같은 조치로 부가가치세수를 약 8% 더 걷을 수 있었음을 밝혔다. 2011년 8월 이후 부가가치세 원천징수세율이 상향조정되었는데, 신용카드 거래가 있는 사업장([그림 Ⅲ-1] A에서 빨간색)과 신용카드 거래가 없는 사업장([그림 Ⅲ-1] A에서 파란색)을 비교한 결과 신용카드사 대리납부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세금 납부가 약 30%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세수입을 비교한 결과 [그림 Ⅲ-1] 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신용카드사 대리납부 적용 이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세수입([그림 Ⅲ-1] C)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아 신용카드사 대리납부의 효과를 더욱 분명하게 확인해 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Ⅲ-1] 신용카드사 대리납부 효과

(단위: 코스타리카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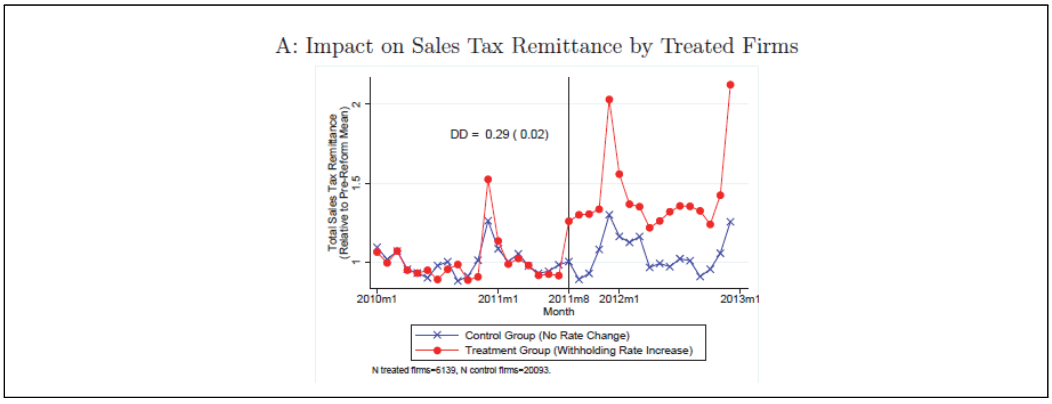

[그림 Ⅲ-1] 계속

(단위: 코스타리카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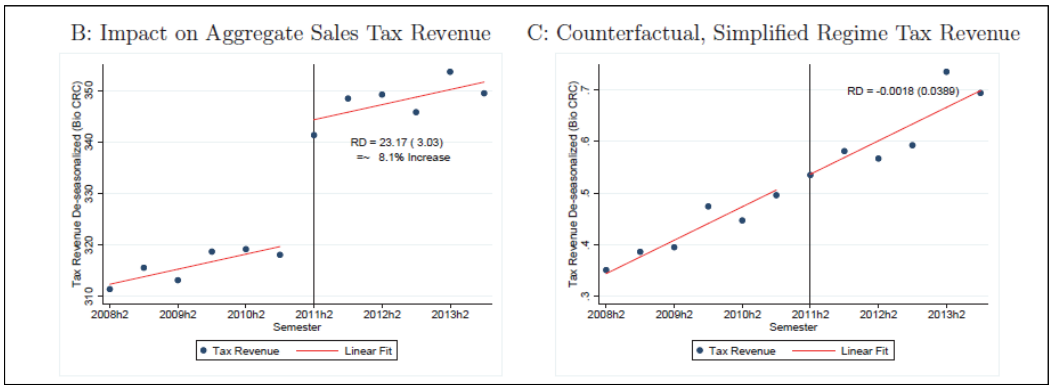

자료: Brockmeyer and Hernandez(2019), p. 45.

〈표 Ⅲ-1〉은 매입자 납부 지정기관 제도 도입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였다. Adu-Ababio et al.(2023), Yesegat and Joseph(2017), Majoni(2021)의 연구 모두 매입자 납부 지정기관의 효과성을 인정하고 있고,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부가가치세수가 증가하였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신용카드사 대리납부제도, 매입자 납부 지정기관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경제 발전 수준이 낮은 국가들이라는 점이다. 경제 발전 수준이 낮을수록 탈세가 더욱 빈번하다는 점, 그래서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더 활발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림 Ⅲ-2] A에서 "No VAT WH"는 매입자 납부 지정기관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를 의미하며, "VAT WH"는 매입자 납부 지정기관 제도를 도입한 국가를 의미하는데, 이 두 국가 집단의 GDP를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매입자 납부 지정기관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들의 1인당 GDP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향이 관찰된다. 매입자 납부 지정기관 제도를 대부분의 재화 및 용역에 시행하는 국가(VAT WH Broad)가 매입자 납부 지정기관 제도를 특정 영역에만 적용하는 국가(VAT WH Targeted)보다 1인당 GDP가 낮은 경향도 관찰된다.

〈표 Ⅲ-1〉 매입자 납부 지정기관 제도 도입의 효과

논문	내용
Adu-Ababio et al.(2023), Assessing the impact of an intervention to withhold value-added tax in Zambia, UNU-WIDER	2017년부터 적용된 매입자 납부 지정기관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정부 당국이 파악하는 거래 빈도, 거래 규모 등이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함
Yesegat and Joseph(2017), VAT withholding in Ethiopia: Implications for Reveneue Collection and Refunds, Australian Tax Forum	단순 추이 분석을 통해, 에티오피아의 매입자 납부 지정기관 제도 도입 이후 에티오피아의 부가가치세 실적 (GDP 대비 부가가치세 비중)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하여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함
Majoni(2021), VAT withholding tax and itx impact on VAT compliance: evidence from Zimbabwe revenue authority, African Multidisciplinary Tax Journal	잠비아에서 매입자 납부 지정기관 제도 도입 이후 부가가치세 세수입이 증가한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자료: 저자 정리

[그림 Ⅲ-2] B는 매입자 납부 지정기관 혹은 신용카드사 대리납부 제도를 도입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을 비교하고, 도입한 국가들 가운데 원천징수 세율의 변화에 따라 국가들을 비교한다. 동 제도를 도입한 경우, 원천징수 세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1인당 GDP가 낮은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Ⅲ-2] 국가 간 비교(매입자 납부 지정기관 제도 및 신용카드사 대리납부 제도)

(단위: 미국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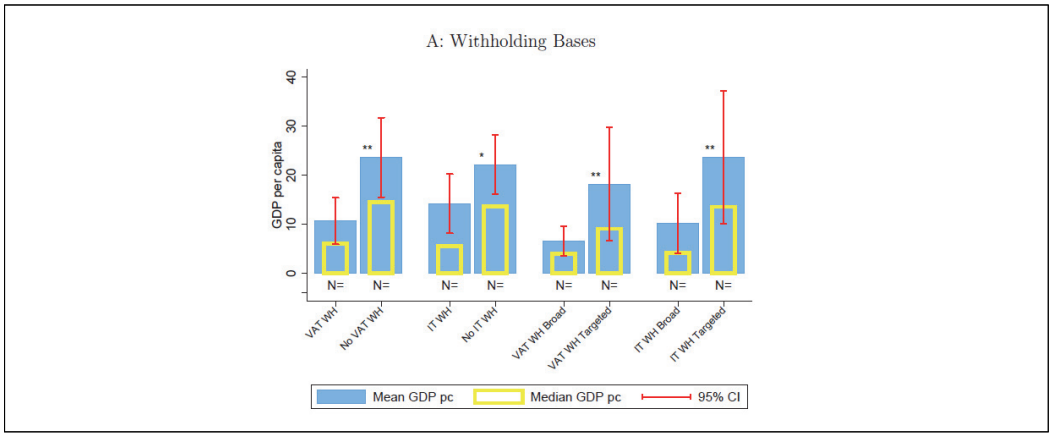

[그림 Ⅲ-2]의 계속

(단위: 미국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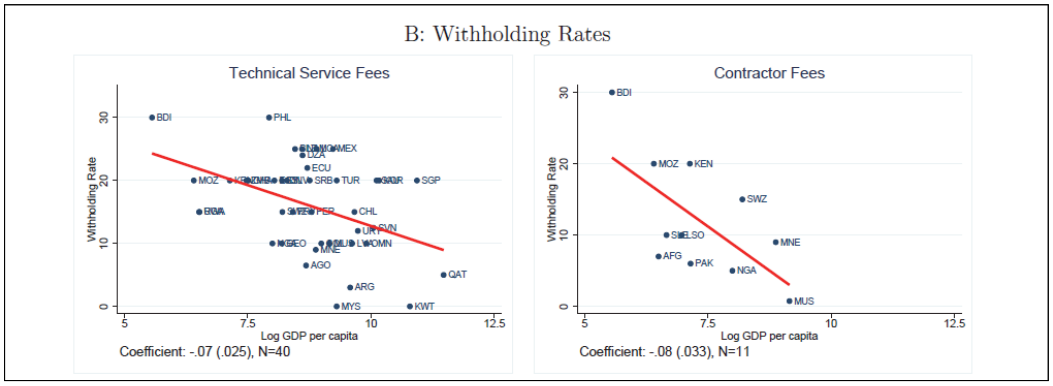

자료: Brockmeyer and Hernandez(2019), p. 42.

2. 각 국가별 대응 방안

1) 영국

제도적 차원에서는 영국 역시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하여 대응하고 있다. 1993년 EU의 경제 단일시장이 형성된 이후 매입자 납부제도 형태의 제도(공제 체계)를 도입하여 운영한 국가이기도 하다. 이 제도 도입 이후에도 앞서 살펴봤듯이 부가가치세 탈세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2000년 9월부터 '회전목마 사기'를 비롯한 부가가치세 탈루에 대한 적극 대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에는 영국의 재무부, 국세청, 국경 경비국, 다른 EU 회원국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영국의 초기 대응 전략은 사업자등록에 대한 철저한 검증작업에 초점을 맞춰 허위 사업자 등록을 사전에 배제하는 전략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사업자 등록 단계에서 사업의 합법성과 상업성을 철저하게 검토하였다. 주로 '회전목마 사기'의 경우 영국 외에서의 수출 및 수입 거래가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관세 당국과의 상호 지원 및 협력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영국의 금 거래 시장에서의 부가가치세 탈루 방안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매입자 납부제도 운영을 통한 부가가치세 탈루의 원천 차단이다. 둘째, 사업자 등록 제도의 철저한 검증 작업이다. 금 거래업체의 등록 및 규제를 강화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했다. 셋째, 거래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금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조사하여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조기에 감지하고 대응하고 있다. 넷째, 정보 공유 체계의 강화이다. 세무 당국 간 정보 공유를 통해 탈세 가능성을 줄였다. 다섯째, 탈루 범죄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였다. 부가가치세 탈루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여, 탈세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하였다.

2) 독일

독일은 영국에 앞서 1980년에 건설업에 대해서는 독일 외의 사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공제 체계를 가장 먼저 도입하였다. 이 체계에 따르면 용역 수요자는 부가가치세를 원천 징수하고 이를 세무 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매입자 납부제도의 개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이때 용역 수요자가 부가가치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하지만 당시 이 규정은 EU의 부가가치세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외국인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 차별적인 제도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금 거래를 비롯하여 부가가치세 탈루 문제가 여러 재화 및 용역에 걸쳐 발견되자 2002년에 독일은 특정 재화 및 용역에 대해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 매입자 납부제도가 적용되는 분야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앞장에서 살펴보았듯이, 금 스크랩,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재활용 및 폐자원 등이 그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의 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한 방안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독일도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한다. 독일은 특히 국내 시장에서의 금 거래 탈루를 막기 위해 매입자 납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둘째, 금 거래 업체에 대한 등록 및 거래 내역에 대한 상세 보고 의무를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금 거래 흐름을 추적하여 탈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장치를 마

련하였다. 셋째, 거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과 자료 분석을 통해 위험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넷째, EU 내에서의 국가 간 협력 체계에 적극 참여하며 국제 거래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였다. 다섯째, 법적 제재의 강화이다.

영국의 대응책과 크게 다른 점을 찾기 어렵다. 영국, 독일뿐만 아니고 기타 유럽 국가들에서도 이와 같은 대응책은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시간 거래 추적의 용이성에 대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금 거래와 관련한 거래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는 차이가 없다.

3) 싱가포르

앞서 살펴보았듯이, 싱가포르는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유럽 국가들과는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매입자 납부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첫째, 금 거래 관련 참여자들에게 모두 일종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사기 범죄에 가담한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적절한 방식으로 증명하지 못할 때는 거래 사슬에서 부가가치세 탈루가 발생한 경우 일정 책임 부담을 지우게 하는 조치를 취했다. 둘째, 금 거래 사업자들의 경우 모든 거래 내역을 정확히 기록하고 세무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였다. 셋째, 전자 세금계산서 및 실시간 거래 추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부가가치세 탈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시간으로 세무 당국과 금융 당국의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절차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넷째, 강력한 법적 제재를 통해 부가가치세 탈루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싱가포르는 “인지 원칙”을 통해 부가가치세 탈루 가능성이 전혀 없는 선량한 사업자에게도 일종의 행정적 부담을 전가하면서까지 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납세협력 비용의 증가로 인한 금 거래 시장의 비효율성 증가를 감수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탈루 방지를 통한 세수 증대 및 거래 정상화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통계 숫자가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비용편익 측면에서도 이러한 정책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4) 기타

매입자 납부제도 혹은 이와 유사한 목적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지정 기관(reverse withholding agents) 제도, 카드사 대리납부 제도 등의 운영을 통해 부가가치세 탈세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국가들도 있다. 주로 남미 및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표 Ⅲ-2〉와 〈표 Ⅲ-3〉).

〈표 Ⅲ-2〉 카드사 대리납부 해외 사례

국가	적용품목 및 대상
에콰도르	카드로 거래하는 재화 및 용역 거래
아르헨티나	카드로 구입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6% 원천징수(표준 부가세율은 21%).
코스타리카	카드로 거래되는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해 6% 원천징수(표준 부가세율은 13%)
과테말라	카드의 모든 거래에 대해 원천징수
온두라스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사업체가 거래하는 품목에 대해서 원천징수
파나마	카드사와 제휴를 맺은 사업체가 거래하는 품목에 대해서 2% 세율로 원천징수(표준 부가세율은 7%)
엘살바도르	카드의 모든 거래에 대해 2% 원천징수(표준 부가세율은 13%)

자료: Ainsworth(2011)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Ⅲ-3〉 매입자 납부 지정기관 제도 현황

국가	지정기관	적용품목 및 대상
나이지리아	정부 및 공공기관, 주유사업자, 통신사업자, 은행 등	이들 기관과 거래하는 재화 및 품목에 대해 표준 부가가치세율 만큼 원천징수함
잠비아	정부 및 공공기관	이들 기관과 거래하는 재화 및 품목에 대해 표준 부가가치세율 만큼 원천징수함
에티오피아	정부 및 공공기관	이들 기관과 거래하는 재화 및 품목에 대해 표준 부가가치세율 만큼 원천징수함
카메룬	정부 및 공공기관	이들 기관과 거래하는 재화 및 품목에 대해 표준 부가가치세율 만큼 원천징수함
콜롬비아	정부기관, 국제무역에 종사하는 사업체 등	이들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 15% 세율로 원천징수(표준 부가가치세율 16%)
터키	정부 및 공공기관, 금융기관	건축업, 청소업, 회계 감사 등의 업종에 관련된 거래의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의 2/3 원천징수
필리핀	정부, 공공기관	이들 기관과 관련된 거래의 5% 세율로 원천징수(표준 부가세율은 12%)

자료: Ainsworth(2011) 참고하여 저자 작성, 각 국가별 Ernst & Young Tax News Update

하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지정기관 제도 혹은 카드사 대리납부 제도를 금 거래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들어 아프리카에서도 금 거래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탈루가 증가하면서 매입자 납부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현재는 유일하게 매입자 납부제도를 적용하는 국가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022년 7월 1일부로 금 거래에 대해 매입자 납부제도를 적용하였다. 금 거래에는 금을 포함한 귀금속 거래에 대해 이를 거래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따라서 사업자들은 새롭게 변한 절차와 기록 유지 의무를 따르게 되었다.

Ⅳ. 우리나라의 현황 및 사례 분석

우리나라는 과거 금지금 등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탈루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문제로 부각된 적이 있다. 특히 2000년 초반부터 금지금과 관련한 범죄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시중에 금이 많이 공급되면서 이와 관련한 범죄도 증가한 것이다. 여러 명의 사업자가 금 거래 과정에서 허위 거래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여 막대한 금액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실제로 금지금 거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환급 사기를 벌였다.

우리나라의 금지금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본격적으로 증가한 것의 원인은 한시적으로 금지금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준 것이었다. 2003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1일까지 금융시장과 금지금 거래 활성화를 위해 순도 99.5% 이상의 금괴, 즉 금지금을 거래할 때 일정 기준을 채우는 도매업자 등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세해 주는 "면세금지금 제도"를 운용하였다. 앞서 유럽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비슷한 특성의 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구조를 다르게 가져가는 경우 부가가치세 범죄에 취약해지는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관찰된 것이다.

국세청의 보도자료(2005. 9. 22.)를 살펴보면, 금도매업자들이 면세금지금 제도를 악용하여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탈루한 규모를 총 48건, 약 8,422억원으로 파악하였다. 2003년 487억원, 2004년 4,765억원, 2005년 3,170억원이다. 당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수가 2003년 약 33.4조원, 2004년 약 34.5조원, 2005년 약 36.1조원임을 감안할 때, 2004년에는 부가가치세 탈루 규모가 세수 대비 약 1.4%였다. 이에 따라 초창기 대응은 금지금수출관련 부가가치세 고액 환급 신청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금지금과 관련한 환급 사기의 규모가 커지자 과세 당국은 금지금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으려 하였고, 이에 따라 금 거래 과정에서 사기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사업자들, 즉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 거래를 한 사업자들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당시 과세 당국은 금지금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당시 영국 등 유럽에서 적용하고 있던 매입자 납부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 불법 영세율 거래에 대한 근원적인 차단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 1일부터 금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적용되었다. 금지금을 거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제도 변화에 따라 금지금 거래 전에 지정금융기관에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당시 금지금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약 1만 2천명으로 추산하였다. 이에 따라 금사업자가 금지금을 다른 금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공급받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고,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를 특정하여 금지금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금거래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금지금 매입자가 매입 시에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자가 금지금을 다음 거래 사업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이 지정금융기관에 입금하는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실시간 환급해 주게 된다. 금지금 사업자가 만약 이러한 방식에 순응하지 않고, 금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금지금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징수하였다. 또한 공급받는 자가 금거래계좌를 통해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술하였듯이 이러한 매입자 납부제도 적용에 대한 효과검증 연구는 부재하다. 기존에 이를 다루고 있는 연구는 엄밀한 실증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정다운·정재호(2023)는 매입자 납부제도의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해 철스크랩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평가하였는데, 본고는 이를 요약하고 금지금에 대한 매입자 납부제도 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금 거래 시장에 매입자 납부제도가 도입된 시점이 2008년으로 기준 연도 전후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 본고에서 금지금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제Ⅳ장에서는 금지금 부가가치세 탈루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도입된 매입자 납부제도의 효과성을 살펴보고, 향후 금지금 시장의 부가가치세 탈루를 추가적으로 줄이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금지금 및 귀금속 시장의 탈루 현황

2008년 금지금 거래에 대해 매입자 납부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금지금, 귀금속 시장에서의 부가가치세 탈루 문제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소위 '뒷금'으로 불리는 세금계산서를 남기지 않는 거래로 인한 부가가치세 탈세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정상적인 거래와 달리 세금계산서 자체를 수수하지 않는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물론 소득세까지 탈루하는 경로이다. 음성적인 시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해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수천억원 증발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기준 금액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최종 소비자들의 현금 영수증에 대한 인식 역시 높아진 상황이고, 신용카드 및 모바일 거래가 증가하면서 최종소비자와 무자료 거래를 하는 사례는 매우 크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주로 고가의 골드바, 귀금속 등을 거래하는 최종 소비자의 경우, 거래 단위가 크다 보니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에 거래하려는 유인이 있어, 사업자들의 무자료 거래 유인과 일치하게 되어, 부가가치세 탈세의 문제가 여전하다. 규모가 크다 보니 부가가치세 탈루의 규모도 여전히 크다는 문제가 있다. 결국 이 문제는 매입자 납부제도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표 Ⅳ-1〉 금 거래 건수 및 부가가치세액

(단위: 천건, 억원, 건, 억원, %)

연도	금 거래건수	금 거래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징수건수	부가가치세 징수세액	금 거래 공급가액 대비 징수세액
2014	125	51,669	293	273	0.53
2015	140	69,730	938	695	0.99
2016	126	78,567	1,490	951	1.21
2017	148	79,915	1,306	1,000	1.25
2018	159	82,355	1,193	914	1.11
2019	134	96,628	1,143	1,011	1.05
2020	110	101,028	1,260	1,501	1.49
2021	211	183,566	957	1,742	0.95
2022	199	179,573	1,028	1,941	1.08

자료: 『매일경제』, 「금 17조원어치 거래했는데 세금은 고작 2천억」, 2023. 10. 2., https://stock.mk.co.kr/news/view/243539, 검색일자: 2024. 6. 19.

정부 역시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고 금 거래의 양성화를 위해 시장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2014년에는 KRX 금시장을 개설하면서 금 현물시장을 통한 거래 양성화를 추진하였지만 탈세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 거래 건수는 연도별로 유사한 수준이지만, 금 거래 공급가액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2015년부터는 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건수도 예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후에의 부가가치세 징수 건수의 큰 변화는 없다. 부가가치세 징수세액도 징수 건수가 증가하고 금 거래 공급가액이 증가하면서 증가하고 있다. 2014년 273억원에서 2017년에는 1천억원, 2022년에는 1,941억원으로 증가했다.

〈표 Ⅳ-2〉 금 거래 수출입 동향

(단위: 미국 1,000달러, 미국 1,000달러, %, %)

연도	금 수출 거래액	금 수입 거래액	전체 거래액 대비 수출 거래액	전체 거래액 대비 수입 거래액
2014	1,051,267	1,299,290	27.8	34.4
2015	918,074	1,229,607	18.0	24.1
2016	1,152,073	911,873	20.1	15.9
2017	557,891	2,192,358	9.55	37.5
2018	544,369	1,013,772	9.04	16.8
2019	885,385	888,008	12.5	12.6
2020	1,710,140	908,457	23.2	12.3
2021	695,493	2,569,354	5.18	19.1
2022	1,300,343	1,158,144	9.91	8.82
2023	1,545,929	983,360	–	–

자료: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자료 이용하여 저자 작성

단순 계산으로 금 거래 공급가액 대비 부가가치세 징수세액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에는 0.53%, 2020년에는 1.49%, 2022년에는 1.08%였다. 징수세액의 크기가 증가하긴 하였으나, 높지 않은 비율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거래량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낮은 비율이다. 〈표 Ⅳ-2〉는 우리나라의 금 수출입 현황을 보여준다. 2014년 금 수출 규모는 약 10.5억달러(2024년 6월 환율 기준 약 1.43조원)로 2014년 금 거래 공급가액 대비 약 27.8%였으며, 2022년 기준으로는 약 13억달러(2024년 6월 약 1.58조원)로 2022년 금 거래 공급가액 대비

약 9.91%였다. 수입 거래 규모도 전체 거래 규모 대비 2014년 약 34.4%에서 2022년 기준으로 8.8%까지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통계로 집계된 전체 금 거래 공급가액 가운데 수출입과 상관없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가 일부 실패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Ⅳ-3〉 귀금속 소매업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포상금

(단위: 건수, 만원)

연도	신고건수	포상금 지급액
2019	1,252	46,800
2020	1,839	73,700
2021	2,509	110,700
2022	3,128	139,700

자료: 『한국세정신문』, 「금은방 현금영수증 거부 급증」, 2023. 10. 4.,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1396.

실제로 귀금속 소매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도 최근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귀금속 소매업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건수는 2019년 1,252건, 2020년 1,839건, 2021년 2,509건, 2022년 3,128건으로 계속 증가하였고, 포상금 지급액 규모도 2019년 약 4.7억원, 2020년 약 7.4억원, 2021년 약 11억원, 2022년 약 13.9억원으로 증가하였다.

금지금에 대한 매입자 납부제도가 2008년 도입이 되고 부가가치세 탈루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10여 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금 거래 시장에서의 탈루는 지속되고 있다. 매입자 납부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통계 및 상황들은 매입자 납부제도의 도입이 중장기적으로 금 거래 시장의 부가가치세 탈루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우리나라 금 거래 시장에서의 부가가치세 탈루의 핵심은 무자료 거래라고 판단된다. 무자료 거래가 많은 우리나라의 현실은 EU 및 기타 다른 국가들의 회전목마 사기 혹은 행방불명 사기 행태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금지금 및 귀금속의 국경 간 거래 및 순환 거래 과정에서의 부가가치세 탈루에 대한 범죄는 매입자 납부제도로 인해 많은 정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U 및 기타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경로를 통한 부가가치세 탈루가 많아 매입자 납부제도의 효과를 크게

평가한다. 국경 간 거래보다 국내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탈루가 많아진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는 매입자 납부제도의 개선 혹은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조치로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음 절에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매입자 납부제도의 효과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금 거래 시장에서의 매입자 납부제도의 역할, 그리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차례대로 살펴본다.

2. 매입자 납부제도의 평가(철 스크랩 시장)

1) 철 스크랩 시장

철 스크랩은 철강제조의 핵심 자원으로서 철강재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이며, 철 스크랩은 [그림 Ⅳ-1]과 같이 분류한다. 철 스크랩은 철과 스크랩을 모두 지칭하며, 쇠 부스러기, 파쇠 등이 포함되고, 철광석 및 원료탄 등과 함께 철강산업의 3대 원료 중 하나다. 철 스크랩의 주요 특징은 철은 한 번 허용된 후에도 철 스크랩으로 회수되어 90% 이상 다시 철로 생산되어 사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철 스크랩은 다시 철강의 원료로 사용되는 등 순환 자원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는 금의 속성과도 유사하며, 이러한 속성 때문에 부가가치세 탈루 범죄에 취약할 수 있다.

한국철강자원협회의 철 스크랩 소개에 따르면 철 스크랩은 발생원에 따라 자가 발생 철 스크랩(home scrap), 가공 철 스크랩 (prompt industrial scrap), 노폐 철 스크랩(obsolescent scrap) 등으로 분류한다. 자가 발생 철 스크랩은 환원된 철 스크랩으로써 제강공장 또는 철강재 제조 발생하며, 고로, 전기로 등 철강재 생산과정에서 제품화에 부합하지 않거나, 생산 공정 중 발생되는 자투리 스크랩을 의미한다. 가공 철 스크랩은 기계공장 및 철강재 가공공장/조선/자동차 공장 등에서 철강재를 사용하여 공업용 또는 소비자용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 스크랩을 의미하며, 철강 수요산업의 생산공정에서 철강재 가공 시에 발생하는 철 스크랩을 포함한다. 노폐 철 스크랩은 유용성이 소멸되어 기존 소유자가 재사용 목적에 맞게 처리한 철강 폐기물을 의미하며, 최종 제품의 유용성이 소실되어 철강 폐기물로 가공 처리한다.

[그림 Ⅳ-1] 철 스크랩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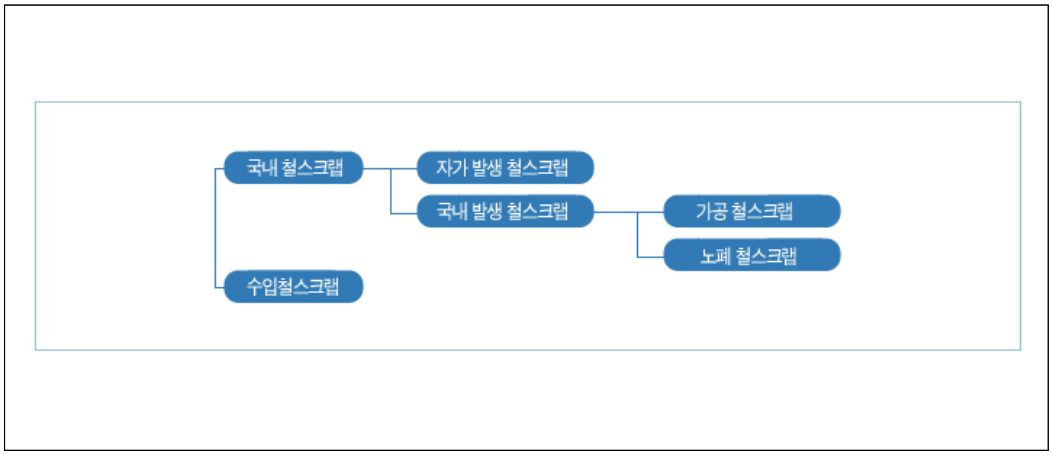

자료: 한국철강자원협회 홈페이지, http://www.kosia.kr/iron/iron_04.php, 검색일자: 2024. 5. 22.

[그림 Ⅳ-2] 철 스크랩의 공급원별 연도별 추이

(단위: 천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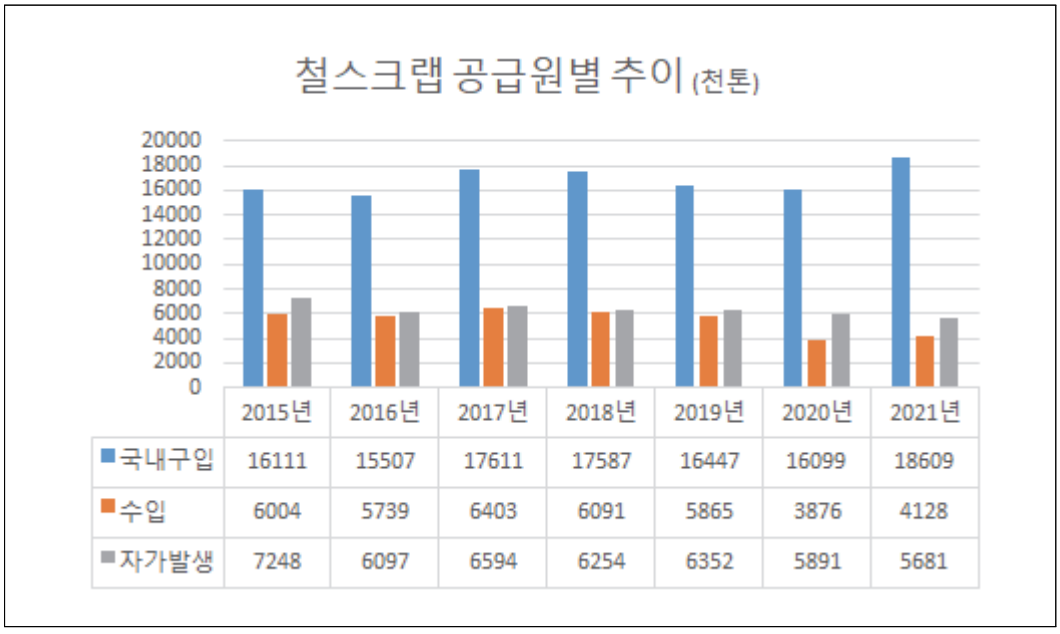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국내구입	16111	15507	17611	17587	16447	16099	18609
수입	6004	5739	6403	6091	5865	3876	4128
자가발생	7248	6097	6594	6254	6352	5891	5681

자료: 『페로타임즈』, 「한국 2022년 철스크랩 및 철강 산업 주요 이슈」, 2022. 8. 29., https://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72

2021년 기준 철 스크랩의 구입량은 약 2,842만톤이며, 이 가운데 65.5%가 국내 구입분으로 약 1,861만톤이고 그 뒤를 이어 자가 발생이 568만톤, 그리고 수입 분

이 약 413만톤을 차지하고 있다. 철 스크랩의 수요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소비량이 2017년 3천만톤을 처음으로 상회하였으며, 그 이후 소폭 감소하였고,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에는 2,580만톤까지 감소하였으나, 2021년 약 2,830만톤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Ⅳ-3] 철 스크랩 가격의 연도별 변화

(단위: 천원/톤당, 달러/톤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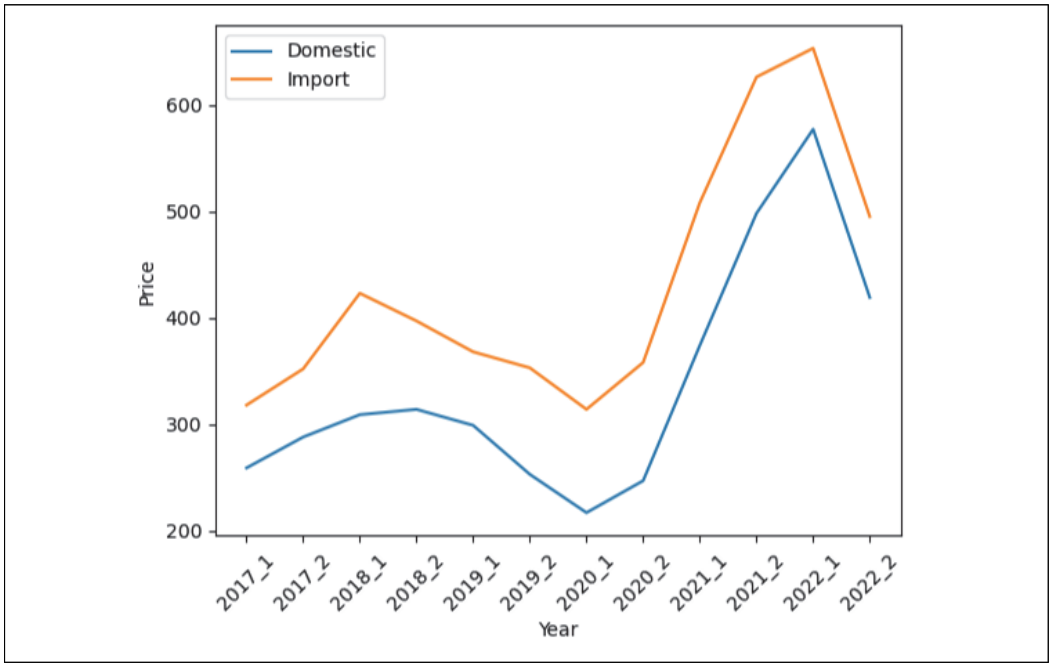

주: X축은 연도와 상하반기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자료 이용하여 저자 작성

철 스크랩의 가격 동향을 살펴보면, 최근 들어 원자재 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철 스크랩의 가격 역시 국내 판매 및 수입분 모두 증가하였다. 2017년 상반기 국내 철 스크랩(경량 A 기준)의 가격은 톤당 25만 9천원이었으며, 코로나19 직후인 2020년 상반기 가격은 톤당 21만 7천원 수준까지 하락하였다가, 최근 들어 가격이 상승하여 2022년 상반기 기준 톤당 57만 7천원에 거래되었다. 수입분 가격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는데, 2017년 상반기 수입분 철 스크랩 가격은 톤당 318달러이며, 2020년 상반기 가격은 톤당 314달러였고, 2022년 상반기 가격은 톤당 653달러까지 증가하였다.

2) 철 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의 효과

철 스크랩 시장의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선 국세통계자료의 부가가치세 정보를 활용한다. 김재진·홍성열·이형민(2015)은 철 스크랩에 대한 매입자 납부제도의 효과성을 추정하면서 부가가치세 국세통계자료를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철 스크랩에 대한 매입자 납부제도 시행 전에 수행된 연구로,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한 것은 아니다. 김재진·홍성열·이형민(2015)의 부가가치세 통계 자료 활용 아이디어를 본 연구에 적용하기 위해 국세통계자료를 확인한다. 참고로 국세통계자료가 금 시장에 대한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시점인 2008년 전후로 제공되면 금 거래 시장의 매입자 납부제도 효과를 살펴볼 수 있지만, 현재 해당 시점에 대한 자료 접근은 불가하다.

우선 연도별 부가가치세의 납부 실태를 확인한다. 이는 철 스크랩 시장뿐만 아니라 금 거래 시장, 그리고 부가가치세 전반에 대한 통계이다(〈표 Ⅳ-2〉). 부가가치세 징수 결정액 대비 당해 연도 신규 체납액의 비율은 연도별로 큰 변화는 없으며, 2015년에 체납비율이 증가하였다 그 이후 감소한다. 금 거래 시장에 대한 매입자 납부제도가 처음 도입된 2008년 이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체납 비율은 소폭 감소하였지만, 그 이후 다시 증가하였다. 2020년 체납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과세 이연 등의 세정 지원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된다.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에 따른 체납액 변동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매입자 납부제도가 도입되었던 시점과 부가가치세 전체 체납 규모의 관계를 [그림 Ⅳ-18]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림만으로는 일부 품목에 대한 매입자 납부제도의 도입이 부가가치세 전체의 체납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금지금 등에 대한 매입자 납부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체납 비율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매입자 납부제도가 도입된 2014년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였다. 철 스크랩 등에 대해 매입자 납부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후에는 다시 체납이 감소하여 제도 도입 이후 체납 규모의 방향성을 일관되게 확인하기 어렵다.

〈표 Ⅳ-4〉 부가가치세 징수 결정액 및 당해 연도 신규 체납액

(단위: 억원)

귀속연도	부가가치세 징수 결정액(A)	당해 연도 신규 체납액(B)	체납 비율(C=100*B/A)
2001	287,351	26,399	9.19
2002	349,899	33,268	9.51
2003	376,330	42,221	11.22
2004	399,081	55,753	13.9
2005	415,770	47,796	11.5
2006	427,730	58,158	13.6
2007	462,484	62,077	13.4
2008	514,594	61,131	11.9
2009	525,948	62,720	11.9
2010	549,427	62,740	11.4
2011	593,584	67,070	11.3
2012	623,337	71,360	11.4
2013	624,182	74,484	11.9
2014	635,287	73,854	11.6
2015	603,168	89,509	14.8
2016	684,666	90,613	13.2
2017	744,549	94,639	12.7
2018	779,276	97,011	12.4
2019	778,104	95,357	12.3
2020	719,806	42,879	5.96
2021	805,175	84,001	10.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이용하여 저자 작성

앞선 유럽의 사례에서도 확인하였듯이, 이러한 기초 자료 분석 결과가 매입자 납부제도의 효과성을 부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 해당 품목이 전체 부가가치세 체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서 제도의 효과를 식별하는 데 충분한 변이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매입자 납부제도의 일부 품목에 대한 적용이 전체 부가가치세 체납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을 관찰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한 매입자 납부제도의 도입이 부가가치세 전체의 체납 규모를 줄이는 데 미미한 역할을 하였거나, 매입자 납부제도의 도입에 따라 해당 품목의 체납은 줄었지만, 기타 부분에서 체납이 증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림 Ⅳ-4] 연도별 부가가치세 징수 결정액 대비 체납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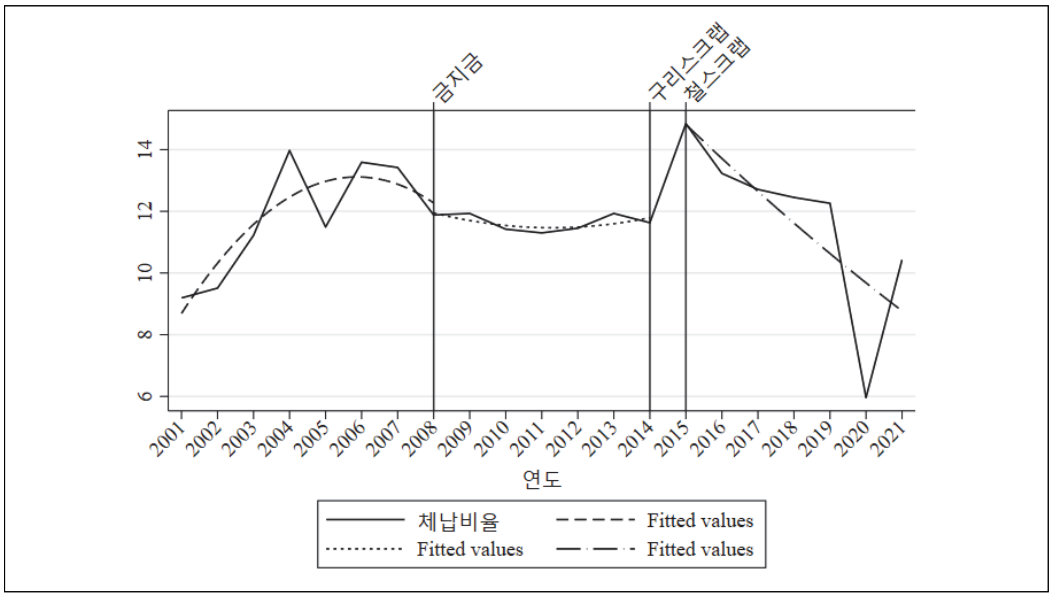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이용 저자 작성

기초 통계 자료 분석에서 제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제도의 효과가 없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 만큼, 적절한 식별전략을 갖춘 추가 분석을 통한 강건성(robustness)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환경부의 「환경산업통계조사」 자료의 업종별 매출액 정보를 사용하여 철 스크랩에 대한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환경산업통계조사」는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구조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통계자료이며, 2001년 6월에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본장의 분석에는 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자료만을 사용하기로 한다. 「환경산업통계조사」는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현황과 규모를 조사하며, OECD/Eurostat의 통계 매뉴얼을 기초로 작성된 자료로써, OECD 매뉴얼에 기초한 환경산업특수분류 167개 업종에 대해 조사하였다. 약 6천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방문면접과 인터넷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환경산업통계조사」를 본고의 분석에 활용하는 이유는 철 스크랩 관련 사업체와 이와 유사한 사업체들에 대한 매출액을 비롯한 경제 정보 및 환경 관련 정보가 있어,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환경산업통계조사」에

포함된 조사 대상 산업은 자원순환관리, 물관리, 환경복원 및 복구, 기후대응, 대기관리, 환경안전·보건, 지속가능 환경·자원, 환경지식·정보·감시 등 환경보전 및 관리를 위한 환경시설 및 측정기기 등을 설계·제작·설치하거나 환경기술 등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다. 철 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사업체는 산업분류상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에 포함되며, 「환경산업통계조사」에서도 관련 산업을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다.

환경부의 「환경산업통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철 스크랩 업종의 매입자 납부제도의 효과를 검토하는 분석의 아이디어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매입자 납부제도를 통해 기대하는 것은 가공세금계산서 등의 허위거래를 하는 사업체들이 감소하여 궁극적으로는 탈루되는 부가가치세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다. 매입자 납부제도는 이론적으로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체의 매출과 매입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매입자 납부제도의 도입이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허위거래업체, 소위 폭탄업체 등의 숫자를 유의미하게 감소시킨다면, 이는 조사 자료에서 파악되는 매입자 납부제도의 영향을 받는 업체들의 매출액 규모의 변화로 관찰될 것이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이전에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들은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으로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 간접적으로는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이 위장거래 등의 부가가치세 탈루에 연루된 사업자들의 규모를 감소시킴으로써 거래 과정에서 이러한 '폭탄 업체'와 거래하였던 정상적인 사업자들의 매출은 감소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1] 결과적으로 매입자 납부제도가 도입되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업종에 속한 사업체들의 평균적인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기대할 수 있다. Buettner and Tassi(2023)의 연구의 방법과 유사하게 매출액 정보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나, 이 연구에서 추가로 확인한 매입세액에 대한 정보를 본 연구에서는 활용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예측을 「환경산업통계조사」 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확인하고자 한다. 이 분석에서는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체가 속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의 매출액과 기타 유사하지만 매입자 납부제도는 적용되지 않는 업종을 비교하는 것이 분석의 핵심이다.

위의 분석 방법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매입자 납부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1) Buettner and Tassi(2023)에서는 폭탄업체와 거래를 한 정상적인 사업자를 'Buffer Trader'라고 지칭함

방법론은 정책 분석에 주로 활용되는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을 적용한다. 이중차분법은 제도의 대상이 되는 처치집단(treatment group)과 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제집단(control group)의 관심 종속변수의 정책 전후의 변화를 비교하여 제도의 효과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이중차분법은 정책의 효과를 비교적 쉽고 직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분석 결과의 해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엄밀한 이중차분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이중차분법에 필수적인 가정들이 성립하여야 하며, 효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자료를 통한 추가적인 작업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약으로 이중차분법 가정의 성립과 강건성 분석에 대해서는 간략한 형태로만 분석하였다.

이중차분법 적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가정은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이 비교적 유사한 특징을 지니는 비교 가능한 집단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 장의 분석에서는 매입자 납부제도의 대상이 되는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을 처치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처치집단과 유사한 성격의 업종으로서 비교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업종들 가운데, 매입자 납부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종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환경산업통계조사」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상위 분류 업종은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이며, 처치집단과 유사한 특징을 갖는 업종은 같은 상위 분류 업종을 공유하고 있는 업종으로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업종은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과 '환경 정화 및 복원업'이며, 본 장의 분석에서는 이들을 처치집단과 잠재적으로 비교 가능한 통제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본 분석에 사용되는 기준보다 더 세분화된 업종별 분류가 더 이상적이지만, 자료가 제공되지 않아 분석은 현재의 기준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

〈표 IV-5〉는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에 속하는 사업체들의 연도별 평균 매출액과 환경관련 매출액의 기초 통계를 비교하였다.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체가 속해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은 2012년에 매출액이 약 45.8조원이었으며,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해 매입자 납부제도가 도입된 2014년과 철 스크랩 등에 대해 매입자 납부제도가 도입된 2015년의 매출액은 약 5조원 대로 감소하였다. 매출액이 급감한 것은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에 속한 사업체 수가 2013

년 8,192개소에서, 2014년 1,758개소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매출액은 2016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21년에는 약 8.1조원 규모이다.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은 2012년에 규모가 약 4.3조원이었으며, 2017년에는 규모가 크게 증가하여 약 15.2조원까지 증가하였다가, 2021년에는 약 12.2조원 규모이다. '환경 정화 및 복원업'의 경우, 2012년에는 약 34.7조원이었으며, 2015년에 크게 감소하였다가 2021년 기준 약 11조원이며, 매출액의 변화가 앞선 두 업종에 비해 큰 것이 특징이다.

〈표 Ⅳ-5〉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매출액 변화

(단위: 백만원)

연도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2012	45,834,720	4,287,477	34,726,192
2013	41,890,528	2,684,388	44,536,000
2014	5,147,649	3,855,969	9,938,950
2015	5,238,277	2,741,989	681,070
2016	11,279,432	5,837,718	2,858,425
2017	11,260,979	15,246,310	2,466,057
2018	5,782,487	3,816,297	1,432,734
2019	8,170,579	11,394,355	26,303,902
2020	9,506,278	11,565,135	19,874,732
2021	8,050,796	12,164,941	11,036,333

자료: 환경부, 「환경산업통계조사」 자료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Ⅳ-6〉은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 속하는 사업체 수의 연도별 변화와 사업체 1개소당 매출액 변화를 보여준다.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사업체 1개소당 매출액의 변화는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과 '환경 정화 및 복원업'의 사업체 1개소당 매출액 변화에 비해 규모가 작고, 매출액 변동성도 작다. 매입자 납부제도가 도입되었던 2014년에 사업체 1개소당 매출액이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에서는 감소하고,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과 '환경 정화 및 복원업'에서는 증가하는 등 매출액 변화 방향이 대비된다.

〈표 Ⅳ-6〉 사업체 수 및 사업체 1개소당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매출액 변화

(단위: 백만원)

연도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사업체 수	매출액/사업체	사업체 수	매출액/사업체	사업체 수	매출액/사업체
2012	10,225	4,482.6	866	4,950.9	500	69,452.4
2013	7,726	5,422.0	317	8,468.1	149	298,899.3
2014	1,314	3,917.5	411	9,381.9	33	301,180.3
2015	1,317	3,977.4	427	6,421.5	120	5,675.6
2016	1,422	7,932.1	743	7,856.9	85	33,628.5
2017	1,520	7,408.5	822	18,547.8	84	29,357.8
2018	1,542	3,749.9	841	4,537.8	86	16,659.7
2019	1,829	4,467.2	793	14,368.7	103	255,377.7
2020	2,013	4,722.4	860	13,447.8	129	154,067.7
2021	2,077	3,876.2	980	12,413.2	122	90,461.8

자료: 환경부, 「환경산업통계조사」 자료 이용하여 저자 작성

이중차분법을 적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회귀 방정식을 통해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text{매출액}_{it} = \alpha \text{매입자납부제도}_{it} + \theta_t + \gamma_i + X_{it} + \epsilon_{it} \qquad \text{식 (IV-1)}$$

식 (IV-1)은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이 해당 업종의 매출액에 미치는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추정하는 모형이다. 식 (IV-1)에서 θ_t는 시간을 의미하는 지시 변수로, 철 스크랩 등에 대해 매입자 납부제도가 도입된 2015년 이후에는 1의 값을, 그 이전에는 0의 값을 나타내는 변수이며, γ_i 는 처치집단을 의미하는 지시 변수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은 1의 값을, 그 외에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또는 '환경 정화 및 복원업'은 0의 값을 갖는다. 매입자납부제도_{it}가 의미하는 것은 처치집단인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2015년 이후의 상황을 의미하는 지시변수로서, θ_t와 γ_i의 교차항(interaction term)이며, 본 분석의 주된 관심 독립변수이다. X_{it} 는 사업체들의 종사자 수, 연도 더미 등 매출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제 변수를 의미한다. 식 (IV-1)을 통해 추정하고자 하는 계수는

α이며, 이는 매입자 납부제도 이후 철 스크랩 사업자들의 매출액 변화를 나타내며, 본 분석의 주요 관심 계수이다. 본 장에서의 분석은 해석의 편의를 위해 매출액에 로그 값을 취해 계수를 해석한다.

앞선 식 (IV-1)을 사용하여 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IV-7〉에 정리하였다. 통제집단을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으로 한정하였을 때, 매입자 납부제도에 따라 철 스크랩 사업체가 속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매출액은 오히려 약 7.5% 증가하였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IV-7〉의 (2)열에서는 통제집단을 '환경 정화 및 복원업'으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매입자 납부제도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의 (3)열은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과 '환경 정화 및 복원업'을 동시에 통제집단으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이 경우에도 매입자 납부제도의 유의미한 효과를 찾을 수 없었고,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지지만, 계수의 부호가 음(-)수로 나타났다. 사전적인 이론적 기대는 매입자 납부제도로 인해 과표가 양성화되면 폭탄업체의 감소로 인해, 통계에서 포착되는 사업체들의 매출은 감소하는 것으로 기대되나, 실증 분석 결과, 제도로 인한 효과를 동 분석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표 Ⅳ-7〉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의 효과 1

로그 매출액	(1)	(2)	(3)
α(매입자 납부제도 효과)	0.075 (0.064)	0.073 (0.078)	−0.050 (0.075)
처치집단 지시변수	0.080** (0.045)	−0.147 (0.065)	0.082 (0.062)
2015년 이후 지시변수	0.052 (0.061)	−0.081 (0.089)	−0.044 (0.076)
통제집단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주: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자료: 환경부, 「환경산업통계조사」 자료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IV-8〉은 제도의 적용 시점을 2015년이 아닌 2014년으로 조정하여 강건성 분석을 진행한 결과를 보여준다. 철 스크랩 등에 대한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이전에

구리 스크랩 등에 대한 매입자 납부제도가 2014년에 도입이 되었고, 구리 스크랩 역시 역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2015년에 한정하여 실증 분석을 수행할 경우, 제도 효과 추정에 편의를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표 Ⅳ-7〉에서 매입자 납부제도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오지 않거나 음(-)수로 나타난 것은, 2014년의 매입자 납부제도의 효과가 2015년의 매입자 납부제도의 효과보다 크고, 사업자들이 2014년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이후 매출액을 조정하는 등의 행태변화가 나타났다면, 2015년의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효과를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 제도의 적용 시점을 2015년이 아닌 2014년으로 재설정하여 분석한다.

분석 결과, 통제 집단을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으로 설정할 경우((1)열), 매입자 납부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매출액이 약 2.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선 〈표 Ⅳ-7〉의 추정치와 달리 음(-)수의 추정치를 보이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져, 결과의 해석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추가적인 강건성 검토를 위해, 통제집단을 '환경 정화 및 복원업'으로 설정할 경우((2)열), 매입자 납부제도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며, 통제집단을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과 '환경 정화 및 복원업'을 함께 사용할 경우((3)열)에도 매입자 납부제도의 효과성은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표 Ⅳ-7〉의 결과와 차이가 없다.

〈표 Ⅳ-8〉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의 효과 2

로그 매출액	(1)	(2)	(3)
α(매입자 납부제도 효과)	−0.024 (0.018)	0.043 (0.094)	−0.070 (0.083)
처치집단 지시변수	0.092*** (0.038)	0.108 (0.084)	0.043 (0.074)
2014년 이후 지시변수	0.088 (0.073)	−0.060 (0.096)	−0.058 (0.057)
통제집단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환경 정화 및 복원업

주: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자료: 환경부, 「환경산업통계조사」 자료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Ⅳ-7〉과 〈표 Ⅳ-8〉의 결과 모두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이 사업체의 매출액을 감소시키거나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통제 집단의 설정에 따라 그 효과가 이질적으로 관찰된다.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제집단의 설정에 따른 추정 결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통제집단의 설정에 따른 이질적 결과가 관찰되는 것은 통제집단의 성격이 처치집단의 성격과 달라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다. 즉 본 분석에서 적용하는 이중차분법의 기본적인 가정이 위배되어 추정치의 신뢰성이 결여되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매입자 납부제도 이전 기간에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매출액 변수에 차이가 있었다면, 제도 도입 이후에 발생하는 차이를 제도의 효과로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도 도입 이전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로그 매출액의 추세를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해 비교해 보았다([그림 Ⅳ-5]). 통제집단을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으로 설정한 경우, 로그 매출액의 추세가 평행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통제 집단을 '환경 정화 및 복원업'으로 설정한 경우, 로그 매출액의 추세가 제도 도입 이전에 평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Ⅳ-5]의 평행추세 가정을 확인한 결과,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상대적으로 더 적절한 통제집단은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보다는 '환경 정화 및 복원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Ⅳ-5]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행추세선 확인

(단위: 로그 매출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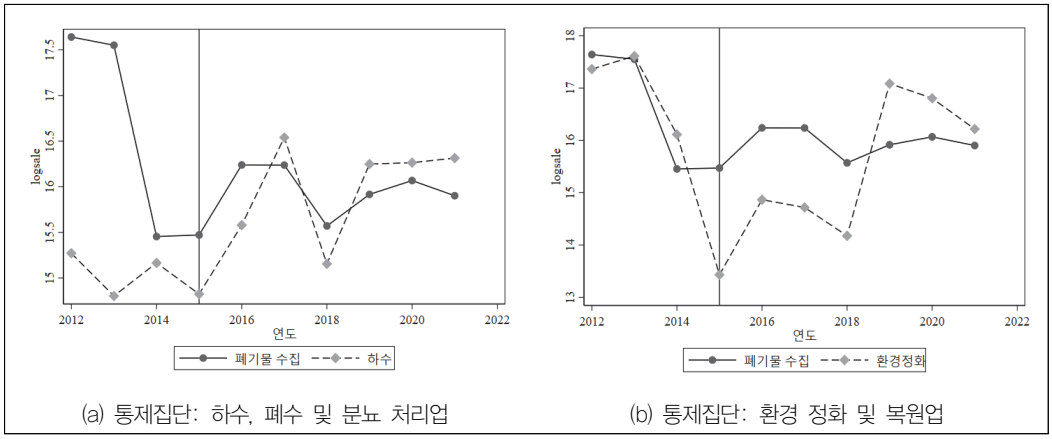

(a) 통제집단: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b) 통제집단: 환경 정화 및 복원업

자료: 저자 작성

결론적으로 앞선 〈표 Ⅳ-7〉과 〈표 Ⅳ-8〉의 결과를 종합하여 해석하면,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이후 이론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체의 매출 감소 효과는 본 분석에서 관찰할 수 없다. 매입자 납부제도의 도입 취지는 탈루되는 부가가치세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며, '폭탄 업체' 등의 등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철 스크랩 등이 속해 있는 사업 규모의 감소는 위법한 거래 혹은 비공식적 거래에 포함된 사업자들로 인해 기존에 과다하게 부풀려 있는 매출 및 매입의 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서는 매입자 납부제도가 실제로 이러한 위장 거래 등의 감소로 인해 해당 업종 사업체들의 평균적인 규모가 감소했다고 판단할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

추가적인 강건성 분석을 위해, 앞서 평행추세선 가정을 만족하는 기타 다른 업종들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하여 제도의 효과를 분석한다. 앞선 분석에서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과 '환경 정화 및 복원업'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들 업종이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과 같은 대분류인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 속하기 때문이다. 같은 대분류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은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과 유사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이전인 2012~2014년 사이의 로그 매출액의 추이가 철 스크랩 등이 속해 있는 사업군과 비교적 비슷한 추이를 보인 통제집단을 선택하여 분석해 보기로 한다. 비록 대분류상으로 다른 업종에 속해 있지만, 로그 매출액의 추세만으로 판단하여 비교 가능한 통제집단을 선별한다. 여러 업종을 검토한 결과,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그리고 '종합건설업'이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과 유사한 매출액 추이를 나타낸다.

[그림 Ⅳ-6] 처치집단과 통제집단(대안; alternatives)의 평행추세선 확인

(단위: 로그 매출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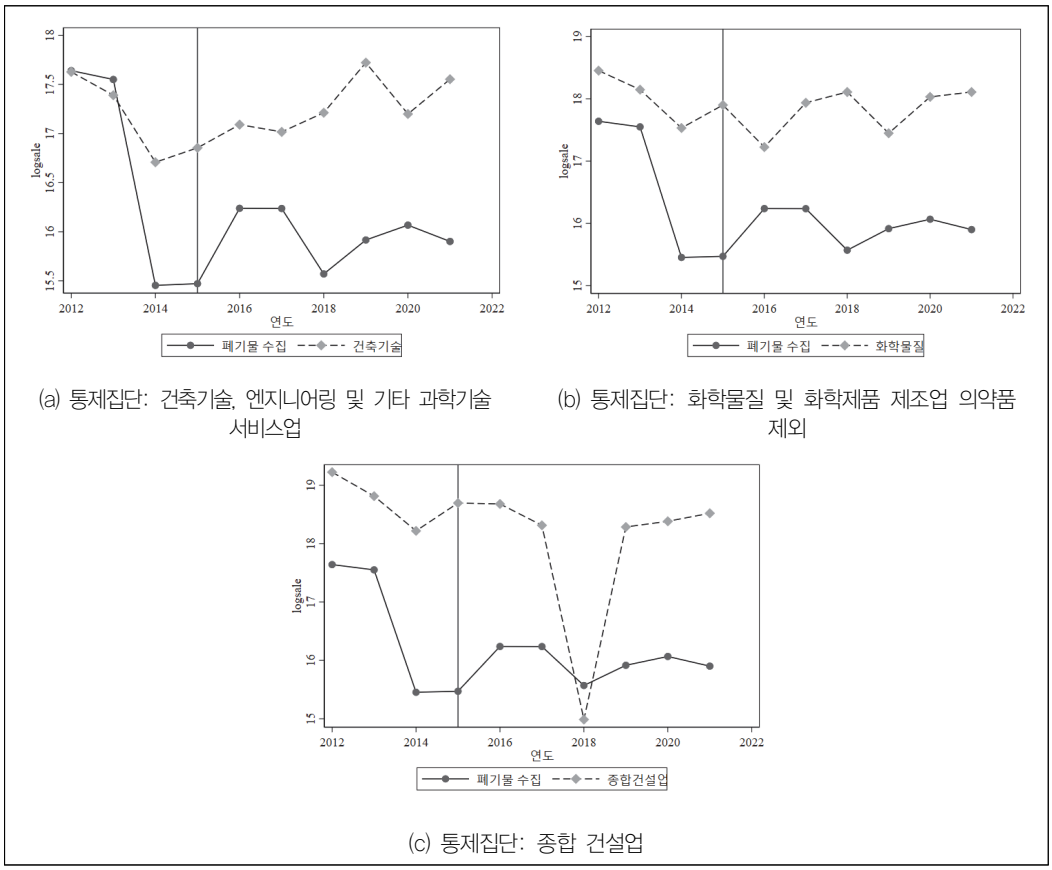

(a) 통제집단: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b) 통제집단: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 통제집단: 종합 건설업

자료: 저자 작성

[그림 Ⅳ-6]은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그리고 '종합건설업'을 각각 통제집단으로 설정하여 로그 매출액의 추이를 처치집단인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과 비교하였다. 로그 매출액의 추이가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완벽한 평행을 보인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비교적 유사하다는 특징은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Ⅳ-6]에 제시된 통제집단을 활용하여 매입자 납부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Ⅳ-9〉와 〈표 Ⅳ-10〉에 제시하였다.

〈표 Ⅳ-9〉는 매입자 납부제도의 도입 시점을 2015년 이후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1)열에서는 통제집단을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

업’으로 설정하였으며, (2)열에서는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업종을 통제집단으로, (3)열에서는 ‘종합 건설업’을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1)열의 결과,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이후 처치집단인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매출액이 통제집단의 매출액에 비해 약 9.6%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통계적 유의수준 5%에서 유의미한 결과이다. (2)열과 (3)열에서는 매입자 납부제도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표 Ⅳ-10〉은 매입자 납부제도의 도입 시점을 2014년 이후로 설정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통제집단을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설정하여 분석한 (1)열의 결과,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이후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매출액이 통제집단의 매출액 대비 약 9.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 통계적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이다. 통제집단을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로 설정하여 분석한 (2)열의 결과,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이후 처치집단의 매출액이 통제집단의 매출액 대비 약 2.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3)열의 분석 결과도, 매입자 납부제도의 효과성을 유의미하게 관찰할 수 없다.

강건성 분석결과,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통제집단으로 사용한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 이론적인 기대 방향과 동일하지만, 다른 집단을 통제집단으로 사용한 경우, 앞선 결과와 동일하게,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이후 철 스크랩 산업이 포함된 업종의 로그 매출액이 매입자 납부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의 로그 매출액과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앞선 분석 결과와도 동일한 시사점을 준다. 매입자 납부제도가 제도의 적용을 받는 업종의 매출액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표 Ⅳ-9〉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의 효과 3

로그 매출액	(1)	(2)	(3)
α(매입자 납부제도 효과)	−0.096** (0.036)	−0.074 (0.042)	−0.019 (0.078)
처치집단 지시변수	−0.036 (0.030)	−0.164 (0.358)	−0.087** (0.050)
2015년 이후 지시변수	−0.042 (0.041)	−0.066 (0.048)	0.012 (0.088)
통제집단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종합 건설업

주: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자료: 환경부, 「환경산업통계조사」 자료 이용하여 저자 작성

〈표 Ⅳ-10〉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의 효과 4

로그 매출액	(1)	(2)	(3)
α(매입자 납부제도 효과)	−0.099*** (0.028)	−0.022 (0.038)	−0.073 (0.085)
처치집단 지시변수	0.087 (0.252)	−0.070 (0.069)	−0.023 (0.068)
2014년 이후 지시변수	−0.020 (0.028)	−0.042 (0.038)	−0.057 (0.080)
통제집단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종합 건설업

주: *** 1% 유의수준, ** 5% 유의수준, * 10% 유의수준
자료: 환경부, 「환경산업통계조사」 자료 이용하여 저자 작성

강건성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매입자 납부제도가 적용된 이후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가 속한 업종의 매출액은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자가 속한 업종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모형에서 매입자 납부제도의 유의미한 효과를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을 통제집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해서만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다. 비록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해 처치집단과 이중차분법의 평행 추세선을 확인하고, 비교 가능한 통제집단으로 분류했지만, 폐기물을 다루는 사업체와 건축기술을 다루는 사업체의 매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결과의 해석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매입자 납부제도가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고 시장의

정상적 거래 활동을 증가시켰다는 결과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매입자 납부제도가 적용된 철 스크랩 등의 업종에 위장 거래 등의 폭탄업체의 비중이 크지 않아서, 제도의 효과를 관찰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제도 도입 전에 철 스크랩 시장에서 '폭탄 업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고, 이들의 조세 포탈 규모도 큰 것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의 타당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폭탄 업체'가 철 스크랩 시장에서 차지하는 실질적인 비중이 높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따라서 매입자 납부제도가 탈루될 수 있었던 부가가치세의 추가적인 확보 혹은 추가 세원의 확보에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기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을 살펴본 앞선 분석 결과와도 유사한 해석이다. 다만 이러한 가능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데, Buettner and Tassi(2023)와 마찬가지로 매입세액에 관련한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 장의 분석 결과가 매입자 납부제도의 잠재적인 기여 및 역할을 단정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 그 효과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음을 인식하는 계기를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새로운 품목에 대한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 제도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 필수적이지만, 그 과정이 현재 부족하다. 본고에서는 제한적이지만, 매입자 납부제도의 일부 품목에의 도입이 부가가치세의 탈루 방지 효과 및 추가적인 세원 확보에 제한적일 수 있음을 보였다. 본 장의 분석은 제한된 자료(업종 분류의 불명확성, 세부 자료의 접근성 제한 등)를 통한 분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세부 업종별 납세 내역 등을 포함하는 세 부담의 변화 방향도 같이 논의되어야 하지만, 이 부분은 추후 매입자 납부제도의 효과의 연구의 과제로 남겨둔다.

분석 결과를 통해 얻는 시사점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금 거래 시장에의 매입자 납부제도의 효과가 사전에 기대한 만큼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유는 앞서 분석한 결과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 시장에서의 부가가치세 탈루 문제가 여전하다는 점 역시 이러한 추측과 동일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둘째, 매입자 납부제도의 효과가 있다면 단기간의 효과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중장기적으로는 제도의 수혜

대상 등이 제도에 적응함에 따라 또 다른 형태의 범죄에 가담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매입자 납부제도의 효과성 결과는 단기적인 효과와 중장기적인 효과의 가중 평균값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단기적인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효과가 단기적인 효과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거나, 효과의 크기가 없는 경우 전체 효과 역시 사전적으로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창출하지 못할 수 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고는 해외 귀금속 거래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탈루의 범죄 형태를 요약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탈루 규모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금 거래 시장에서의 탈루는 주로 회전목마형 사기 또는 행방불명 사업자로 인한 사기로 발생한다. 거래 징수 주체인 매출 사업자가 매출세액을 과세 당국에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과거 금 거래 시장에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상황과 유사하다. EU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EU 역내 단일 시장 도입 이후 국경 간 거래가 거래 과정에 포함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로 국내 시장에서의 부가가치세 탈루가 문제가 되었던 점이 차이점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EU 및 기타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의 매출자의 거래징수 제도를 매입자 납부제도로 변경 적용하였다. 거래 과정에서 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세무 당국에 직접 납부하게끔 하면서 매출자로부터의 부가가치세 탈루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실제로 부가가치세 탈루는 일부 막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Buettner and Tassi(2023)는 독일의 부가가치세 납세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 매입자 납부제도의 효과성을 밝혔다. 하지만 매입자 납부제도와 관련한 신뢰성 있는 추가 연구와 국내 상황을 배경으로 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고에서는 철 스크랩에 도입된 매입자 납부제도의 효과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금 거래 시장에서의 매입자 납부제도의 효과성을 간접적으로 추론해 보았다. 자료의 제약으로 금 거래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철 스크랩 시장에 도입된 매입자 납부제도의 효과성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관찰하지는 못했다. 금 거래 시장에 도입된 매입자 납부제도 역시 단기적으로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효과성을 찾기 어려울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최근에도 금 거래 시장에서의 부가

가치세 탈루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금의 거래 과정에서의 부가가치세 탈루 문제 이 외에도 금은 상속, 증여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고, 무자료로 거래된 금의 경우 향후 상속 및 증여세의 탈루에도 직간접적으로 사용되어, 세금 탈루의 규모는 중장기적으로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매입자 납부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금 거래 시장에서의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을 수 있는 추가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통한 거래 시장의 양성화를 들 수 있다. 원자재인 금의 경우 부가가치에 대한 정의를 부여하는 것이 모호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의 개념을 적용하지 말고 화폐와 같이 취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자는 주장이 있다. 앞서 해외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많은 국가들이 금지금 등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는 현실도 고려한 주장이다. 하지만 금지금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고 가공 처리된 금 제품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등 차별적 과세 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해외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또 다른 부가가치세 탈세를 양산할 수 있다. 또한 비과세 적용이 시장에서의 거래 양성화에 얼마나 기여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전히 소득세 등의 회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비과세 이후에도 거래 양성화를 꺼리는 사업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금지금 면세제도가 의도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도 금 거래에 대한 면세 적용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고에서 싱가포르의 사례를 살펴본 바와 같이, 금 거래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어느 한 사업자에 대한 탈세의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금 거래 시장의 위축을 야기할 수도 있고, 사업자들의 추가적인 납세 협력 비용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단점도 야기되지만, 이를 통해 금 거래 시장의 양성화로 인한 세수 확보 및 거래 양성화에 따른 시장 기능의 회복 등 장점 측면을 고려할 때 충분히 도입해 볼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현행 매입자 납부제도하에서 다음 단계의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환급해 주는 조건에 더해 탈세에 대한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는 입증 서류를 제시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업자들의 무자료 거래 위반 적발 시 더 강한 제재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 금 거래 시장은 무자료 거래의 관행을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

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의 문제이지만, 그 원인을 추적해 보면 최종 소비단계에서의 현금 거래 등을 통한 무자료 거래가 일부 포함된다. 최종 소비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로 금지금 등을 거래할 경우 정상적으로 사업하지 않는 사업자들에게 최종 소비자를 뺏길 가능성이 높고, 이는 다시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는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최종 소비자 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이러한 무자료 거래 행태의 사슬을 끊기 위해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를 보다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일 금융기관에서 동일인의 명의로 1거래일 동안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경우 거래자의 신원과 거래 일시, 거래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전산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자동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심거래보고 제도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의심거래보고 제도는 1거래일 동안 1천만원 미만의 거래라 하더라도 분할 지불 등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보고하는 제도이다. 이를 토대로 국세청은 향후 세무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 역시 이미 운영 중이고, 요건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탈세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대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넷째,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도록 유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있지만, 이보다 더 적극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 이론적으로는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금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와 소위 '뒷금'의 공급가액은 10%가 차이나야 한다. 하지만 대략 이 둘의 차이는 10%보다 작은 것으로 확인된다. 공식적인 통계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귀금속 업계 종사자들은 '뒷금'의 시세를 대략 정상 공급대가에 비해 3~4% 정도 낮게 본다. 결국 소비자들은 10%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정상적인 금 거래 공급가액 대비 약 5% 이상을 비싸게 구입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정상적인 금 거래 시장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매입 금액의 약 5~10%를 세액공제해 준다면 소비자와 정부 모두 이득이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은 금 매입자들이 대부분 고소득층일 가능성이 높아 이들에 대한 세제 혜택에 대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금 거래 시장의 정상화를 통한 세수 확충 및 그로 인한 재원 확보 측면에서 정책 타당성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외 사례에서는 특별히 소비자들에 대한 유인책을 통한 금 거래 시장의 정상화 방안을 찾지는 못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시장에서의 무자료 거래 관행이 고

착화된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설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김재진 · 홍성열 · 이형민, 『철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효과 및 문제점 검토』,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매일경제』, 「금 17조원어치 거래했는데 세금은 고작 2천억」, 2023. 10. 2., https://stock.mk.co.kr/news/view/243539, 검색일자. 2024. 6. 19.

영국 국세청, https://www.imf.org/external/np/seminars/eng/2012/asiatax/pdf/thackray.pdf. 검색일자: 2024. 6. 13.

일본 신문기사, https://www.nippon.com/en/features/h00343/, 검색일자. 2024. 5. 6.

정다운 · 정재호, 『송객수수료에 대한 매입자 납부특례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페로타임즈, "한국 2022년 철스크랩 및 철강 산업 주요 이슈", https://www.ferro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772

『한국세정신문』, 「금은방 현금영수증 거부 급증」, 2023. 10. 4., http://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1396.

한국철강자원협회 홈페이지, http://www.kosia.kr/iron/iron_04.php, 검색일자: 2024. 5. 22.

Adu-Ababio, K., A. Koivisto, A. Kumwenda, G. Chileshe, J. Mulenga, M. Mebelo, I. Mufana, and Y. Shamabobo., "Assessing the impact of an intervention to withhold value-added tax in Zambia," UNU-WIDER Working paper, 2023.

Ainsworth, R. T., "Carousel Fraud in the EU: A Digital VAT Solution", *Tax Notes International*, 2006. pp. 443~448.

_____, "VAT fraud as a policy stimulus—Is the US watching? VAT withholding, RTvat, and the mittler model," *Tax Notes International*, 62, 2011, p. 397.

Bird, R.M. "Review of 'Principles and Practice of Value Added Taxation: Lessons for

Developing Countries,'" *Canadian Tax Journal*, 41(6), 1993. pp. 1222-1225.

Borselli, F. "Organised VAT fraud: Features, magnitude, policy perspectives. Policy Perspe ctives (October 12, 2011)," *Bank of Italy Occasional Paper*, 106.

Braml, M. T. and Felbermayr, G. J., "The EU self-surplus puzzle: An indication of VAT fraud,"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21(6), 2022, pp. 1075-1097.

Brockmeyer, A. and M. Hernandez, "Taxation, information and withholding: Evidence from Costa Rica," The World Bank Working Paper, 2019.

Buettner, T. and Tassi, A., "VAT fraud and reverse charge: empirical evidence from VAT return data,"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2023.

Bussy, A. "Cross-border value added tax fraud in the European Union," Working paper available at SSRN 3569914, 2020.

Butu, I., Brezeanu, P. and Ghetu, R.A. "Reverse charge and vat gap – a mechanism to tackle intra-community VAT fraud," Strategica, 2020.

Cour de comptes, *Fraude intracommunautaire a la TVA*. Technical report, 2012.

European Commission, *VAT gap in the EU*, 2023.

European Council, *VAT reverse charge mechanism: preventing VAT fraud*, 2020. https://www.consilium.europa.eu/en/policies/vat-reverse-charge/

EY, Implementing the destination principle to intra-EU B2Bsupplies of goods, 2015.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system/files/2016-09/ey_study_destination_principle.pdf

Feria, R.D.L., "The new VAT general reverse charge mechanism,", *EC Tax Review*, 28(4), 2019, pp. 172~175.

Frunza, M., "Cost of the MTIC VAT fraud for European Union members," Working Paper available at SSRN 2758566, 2016.

HMRC, *Measuring tax gaps 2019 edition—Tax gap estimates for 2016–17, 2018.*

Keen, M., and Smith, P. "VAT Fraud and Evasion: What do we know, and what can be done?," *National Tax Journal*, 2006, pp. 861~887.

Lashmar, P. and Hobbs, D., "Diamonds, gold and crime displacement: Hatton Garden, and the evolution of organised crime in the UK," Trends Organ Crim, 2018.

Majoni, B., "VAT withholding tax and itx impact on VAT compliance: Evidence from the Zimbabwe revenue authority," *African Multidisciplinary Tax Journal*, 1, 2021, pp. 228~243.

OCS SPF Finances Belgique, *Extracts from Attempt to measure cross border VAT fraud*, 2007,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ld200607/ldselect/ldeucom/101/101we11.htm#n7

Jennings A, Lashmar P, Simson V., "Scotland Yard's cocaine connection," Jonathan Cape, London, 1991.

Stiller, W. and Heinemann, M., "Do more harm than good? The optional reverse charge mechanism against cross-border tax fraud," 95(c), *The Quarterly Review of Economics and Finance*, *2024.*

Tait, A. "Value-Added Tax: International Practice and Problems," Washington, D.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1988.

Yesegat, W.A. and S.A. Joseph, "VAT withholding in Ethiopia: Implications for revenue collection and refunds." *Australian Tax Forum*, 32(2), 2017, pp. 399~428.

국문 요약

해외 귀금속 업계 부가가치세 탈루 현황 조사 및 제도 분석을 통한 국내 시사점

정 다 운

본고는 해외 귀금속 거래 시장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탈루의 범죄 형태를 요약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탈루 규모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금 거래시장에서의 탈루는 주로 회전목마형 사기 또는 행방불명 사업자로 인한 사기로 발생한다. 거래 징수 주체인 매출 사업자가 매출세액을 과세 당국에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과거 금 거래 시장에서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상황과 유사하다. EU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EU 역내 단일 시장 도입 이후 국경 간 거래가 거래 과정에 포함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주로 국내 시장에서의 부가가치세 탈루가 문제가 되었던 점이 차이점이다.

현재 매입자 납부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금 거래 시장에서의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을 수 있는 추가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본고에서 싱가포르의 사례를 살펴본 바와 같이, 금 거래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어느 한 사업자에 대한 탈세의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 금 거래 시장은 무자료 거래의 관행을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의 문제이지만, 그 원인을 추적해 보면 최종 소비단계에서의 현금 거래 등을 통한 무자료 거래가 일부 포함된다. 따라서 최종 소비자 단계에서부터 발생하는 이러한 무자료 거래 행태의 사슬을 끊기 위해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보다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도록 유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에서는 특별히 소비자들에 대한 유인책을 통한 금 거래 시장의 정상화방안을 찾지는 못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 시장에서의 무자료 거래 관행이 고착화된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 설계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Abstract

Analysis of VAT Evasion in the Overseas Precious Metals Industry a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Dawoon Jung

This paper summarizes the forms of VAT evasion frauds occurring in the overseas precious metals trading market and presents case studies on the scale of VAT evasion. In the gold trading market, evasion primarily occurs through carousel fraud or fraud involving missing traders. This involves sales businesses, which are responsible for collecting VAT, evading payment to tax authorities by shutting down operations and thereby evading VAT. This phenomenon is similar to issues that were socially problematic in Korea's gold trading market in the past.

However, unlike the European Union and other European countries, where cross-border transactions became part of the trading proces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EU single market, Korea has mainly faced challenges related to VAT evasion within the domestic market. Given the current adoption of the reverse-charge mechanism,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dditional measures to prevent VAT evasion in the gold trading market.

First, as seen in Singapore's case, it is worth considering imposing a duty on businesses involved in gold trading to identify potential risks of tax evasion by any participating entity in advance. Second, in Korea's gold trading market, it is crucial to put an end to the practice of undocumented transactions. While this is fundamentally an issue with businesses, its roots can be traced to undocumented transactions involving cash payments at the final consumption stage. Therefore, to break the chain of such practices, greater use of the large cash transaction report-

ing system should be encouraged. Third, consumers should be incentivized to actively request cash receipts. While overseas cases have not specifically found measures to normalize the gold trading market through incentives for consumers, Korea's unique characteristic of entrenched undocumented transaction practices in the domestic market suggests that policy design should consider not only businesses but also consumers.

저자약력

정다운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석사 수료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경제학 박사

해외 귀금속 업계 부가가치세 탈루 현황 조사 및 제도 분석을 통한 국내 시사점

2024년 6월 21일 인쇄
2024년 6월 28일 발행

발행인 김재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판 및 인쇄 ㈜에이치에이엔컴퍼니 (02)2269-9917
ISBN 979-11-6655-304-2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